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 2026. 3. 2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2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3. 17.]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2025. 10. 1.>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가. 폐타이어
- 나. 폐섬유
- 다. 폐목재
- 라. 폐합성수지
- 마. 폐합성고무
-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 9. 27.>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9. 27., 2025. 10. 1.>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1. 15., 2011. 9. 27., 2025. 10. 1.>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목개정 2011. 9. 27.]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2025. 10. 1.>

- 1. 한국환경공단
-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1. 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교육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7.]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 삭제 <2017. 12. 27.>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2025. 10. 1.>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2022. 1. 7., 2022. 11. 29., 2024. 6. 28., 2025. 10. 1.>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
-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운반하는 자
5.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2. 9. 24.>

[제목개정 2012. 9. 24.]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 2022. 1. 7., 2022. 11. 29., 2024. 6. 28., 2025. 10. 1., 2025. 12. 30.>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사용
 -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고철·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페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쪼개짐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0의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2025. 10. 1., 2025. 12. 3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심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배출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성 잔재물의 보관량은 150톤 미만일 것
 -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동물성 잔재물 보관 기간은 동물성 잔재물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1일 이내일 것
 4.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팩, 수액병 보관량은 5톤 미만일 것
 -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수액팩, 수액병 보관 기간은 수액팩, 수액병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 2025. 12. 30.>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25. 10. 1.>

1. 삭제 <2011. 9. 27.>

2. 삭제 <2011. 9. 27.>

[전문개정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8. 5. 17.>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 폐유리

다.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9. 27., 2018. 5. 17.>

[제목개정 2011. 9. 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제14조의2 삭제 <2016. 1. 21.>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30., 2025. 10. 1.>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 10. 1.>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7. 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20. 5. 27., 2025. 10. 1.>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 마. 재활용 유형
-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 다. 재활용 유형
 - 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을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

제14조의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이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의 원산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의 구성성분

가. 폐기물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4)가)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나. 폐기물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마목1)가)(1)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4.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5. 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비율
6. 폐기물의 위탁자 및 반입량

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
2.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및 제1호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별표 5의7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2024. 6. 28., 2025. 10. 1.>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 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

[중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17.]

[중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영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 2023. 12. 28., 2025. 10. 1.>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영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 1. 1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17.]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2025. 10. 1.>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5. 28.]

[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중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중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

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9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중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11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조정금액, 계약일·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중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2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6조의5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6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3. 12. 28.>]

제16조의12(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의8에서 이동 <2023. 12. 2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8. 16.]

[중전 제17조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4. 8. 16.>]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1. 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1.]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

제17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31., 2021. 4. 30., 2022. 1. 7., 2024. 8. 16., 2025. 10. 1.>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삭제 <2024. 8. 16.>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마. 폐유독물질
 -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 사. 수은폐기물
 -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목개정 2024. 8. 16.]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16.>]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24. 8. 16.]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 2025. 10. 1.>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2023. 12. 29., 2024. 6. 28., 2025. 3. 1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2022. 11. 29., 2025. 10. 1.>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0. 19., 2025. 10. 1.>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5. 10. 1.>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2026. 3. 26.>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 2025. 10. 1.>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3. 5. 31., 2017. 10. 19., 2025. 10. 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 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2025. 4. 4.>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2025. 4. 4.>

[본조신설 2016. 1. 21.]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2025. 10.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 7., 2025. 10. 1.>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20. 5. 27., 2022. 1. 7.>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2024. 6. 28.>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2025. 10. 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2025. 10. 1.>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본조신설 2018. 3. 30.]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4. 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본조신설 2018. 3. 30.]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중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

제25조의2 삭제 <2017. 10. 19.>

제25조의3 삭제 <2017. 10. 19.>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8. 4.]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30.>]

제27조 삭제 <2008. 8. 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2025. 10. 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
-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2025. 10. 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허용보관량
-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2025. 10. 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2026. 3. 26.>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2., 2016. 7. 21., 2025. 10. 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 2의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본조신설 2016. 1. 21.]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2023. 12. 28., 2024. 12. 27., 2025. 10. 1., 2025. 12. 30.>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 가. 폐전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 나. 동물성 잔재물: 중량 150톤 미만, 1일 이내
 - 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 2)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汚泥)
 - 나.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 5의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보관할 것
 - 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수집할 것
 - 나. 촬영·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보관할 것
-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6.]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20. 5. 27., 2022. 1. 7., 2025. 10. 1.>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2023. 5. 31., 2026. 3. 26.>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 2026. 3. 26.>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0. 19., 2025. 10. 1.>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2025. 10. 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0. 5. 27.]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 2025. 10. 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2025. 10. 1.>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25. 10. 1.>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 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2026. 3. 26.>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라.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26. 3. 26.>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 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25. 10. 1.>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 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매립시설
 -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소각열회수시설
 -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2025. 10. 1.>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 ③ 삭제 <2020. 11. 27.>
-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 2025. 10. 1., 2026. 3. 26.>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 2025. 10. 1.>
1. 소각시설, 열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쇄시설의 경우
- 가. 설계도면
-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가. 설계도면
-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 포함한다)
-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 가. 설계도면
-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
- ⑨ 열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
-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2025. 10. 1.>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 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 2025. 10. 1.>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1. 삭제 <2008. 8. 4.>

2. 삭제 <2008. 8. 4.>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삭제 <2016. 1. 21.>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 1. 21.>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5. 31.]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전문개정 2020. 5. 27.]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2023. 5. 31., 2024. 6. 28.>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5.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3. 5. 31., 2025. 10. 1.>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 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9. 6. 30., 2023. 5. 31.>
- ⑤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 2023. 5. 31.>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과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2023. 5. 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5. 10. 1.>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③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55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6. 7. 2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4. 6. 28.>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폐업의 경우

-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2023. 5. 31., 2023. 12. 28.>

-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⑤ 삭제<2017. 10. 19.>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2025. 10.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2018. 1. 17.>

7. 삭제<2018. 1. 17.>

8. 삭제<2018. 1. 17.>

9. 삭제<2018. 1. 17.>

제62조 삭제 <2008. 8. 4.>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5., 2013. 3. 23., 2013. 5. 31., 2016. 1. 21., 2021. 4. 30., 2025. 10. 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 1. 17.>]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08. 8. 4.]

[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제65조 삭제 <2008. 8. 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2025. 10. 1.>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2024. 6. 28., 2025. 10. 1.>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 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2025. 10. 1.>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2024. 6. 28., 2025. 10. 1.>

1. 폐축전자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페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11.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페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 포장재
[전문개정 2011. 9. 27.]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 17.>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 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

[제목개정 2011. 9. 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 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5. 27.]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조치 이행계획량
-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 ·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2025. 4. 4., 2025. 10. 1.>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 · 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 · 제공하는 정보의 연계 · 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③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 ·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25. 12. 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 · 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1.>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 2025. 10. 1.>

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3. 5. 31.]

제69조의3(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① 영 제24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2. 그 밖에 침출수 또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는 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17. 10. 19., 2025. 3.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 8. 16.]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6. 1. 21.]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6. 1. 21.>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6. 3. 26.>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경제성·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17.]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8. 4.]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3. 30., 2025. 10. 1.>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개정 2018. 3. 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18. 3. 30.>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 2020. 11. 27.>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 2025. 10. 1.>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3. 30.,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2025. 10. 1.>

[전문개정 2016. 7. 21.]

제82조의2 삭제 <2016. 7. 21.>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4., 2025. 10. 1.>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기준 및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삭제 <2024. 6. 18.>
[전문개정 2023. 4. 17.]

부칙 <제33호, 2026.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유기용제 중 할로젠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 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
1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

우를 말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페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페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07-01-01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흘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0-00-0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 51-02 무기성오니류
 - 51-02-01 폐수처리오니
 - 51-02-02 정수처리오니
 - 51-02-03 하수처리오니
 - 51-02-04 하수준설토
 - 51-02-05 건설오니
 -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 51-03-02 폐합성고무류
 -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 51-03-05 양식용폐부자
 -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 51-03-08 폐어망
 -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 51-04 광재류
 - 51-04-01 고로슬래그
 - 51-04-02 제강슬래그
 -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 51-17-05 폐모피류
-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 51-17-07 동물털
- 51-17-08 동물성유지류
-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 51-17-21 주정박
- 51-17-22 맥주박
- 51-17-23 유박유잔재물
- 51-17-24 초분류
- 51-17-25 커피찌꺼기
- 51-17-26 버섯폐배지
- 51-17-27 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23 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51-20-24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51-20-27 폐가구류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 51-29-02 비철금속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51-30 폐유리류
 - 51-30-01 폐유리
 -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30-03 페스마트유리
 - 51-30-04 폐유리섬유
 -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51-31-00 페타일
- 51-32-00 폐보드류
- 51-33-00 폐판넬
-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 51-36 폐가스포집물
 -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 51-37 폐냉매물질
 -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 51-39-00 폐사료
- 51-40 폐소화기류
 - 51-40-01 폐분말소화기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51-41 폐전지류
 - 51-41-01 폐일차전지
 -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51-41-08 폐연료전지
 -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51-42-00 폐의약품류
- 51-43-00 폐흑연가루
-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51-45 폐차발생폐기물
 -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 51-45-02 폐차부품류
 -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 51-47 조명폐기물
 - 51-47-01 폐형광등
 -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

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0-04 폐가구류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나. R-2: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 1) R-2-1: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2) R-2-2: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5) R-3-5: 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3)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4)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 5)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6) R-4-6: 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
- 7) R-4-7: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8) R-4-8: 동·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9) R-4-9: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10) R-4-10: 의약품을 제조하는 유형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가. R-5: 유·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가. R-7-1: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다. R-7-3: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R-7-4: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R-7-5: 석유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들거나 폐기물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4)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5)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R-10-1: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가. R-11-1: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R-11-2: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트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5	폐페놀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6	폐폴리우레탄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7	폐합성고무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8	폐폴리스티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 스티렌(ABS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 물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3	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2	부식성 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2-01-03	폐질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99	그 밖의 폐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2	폐암모니아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 공정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 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 그는 제외한다)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99	그 밖의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2-00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해당 없음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R-2-1,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8-02	폐흡수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	R-3-1, R-3-2, R-3-3,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으로 한정한다)	R-10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으로 한정한다)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10	해당 없음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5-02-00	폐수성페인트	R-2-1, R-3-2, R-4-7, R-10	해당 없음
05-03-00	폐락카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 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 유를 말한다)	R-3-3,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 폐 절삭 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 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 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R-3-1, R-3-2, R-4-6,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기예유·냉동기유·터어빈유· 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 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 세스유 등을 말한다)	R-9-2, R-10	
06-01-04	폐연료유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5	폐오일필터	R-3-1, R-3-2, R-9-2.R-10	해당 없음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 외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 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 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2-00	폐동식물유	R-3-3, R-9-2, R-10	
06-03-00	그 밖의 폐유	R-2-1,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 되는 폐석면		
07-01-01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1-02	흘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 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 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 진	재활용 금지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방진마 스크·작업복, 집진필터 등	재활용 금지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금지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재활용 금지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재활용 금지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재활용 금지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재활용 금지	
09-03-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R-2-1, R-3-2, R-3-3, R-10	해당 없음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R-2-1	해당 없음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금지	
10-12-02	병리계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3	손상성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4-10	해당 없음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1	수은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 첨가 폐램프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2	수은 첨가 폐계측기기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3	수은 첨가 폐전지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99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R-4-7	해당 없음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2.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3	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4, R-4-3, R-9-3, R-9-4, R-10	해당
		R-3-5,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10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3	하수처리오니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4	하수준설토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5	건설오니	R-4-2, R-7-1, R-7-2,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7-3, R-7-6, R-10	
51-02-06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10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 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 폐포장재	R-1, R-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	폐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 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 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2	제강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4	선광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99	그 밖의 광재류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7-3, R-8-1,R-10	해당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3	발전시설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4	폐실리카 품(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	해당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해당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5,R-10	해당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R-3-1, R-3-2, R-10	해당 없음
		R-3-5, R-4-2, R-10	해당
51-06-04	폐여과사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7-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7-02	폐도자기조각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 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 산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 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3, R-10	해당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 닥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R-3-3,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4-2, R-10	해당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3	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99	그 밖의 폐촉매	R-1-1, R-3-1, R-3-2, R-3-4, R-4-1, R-4-7,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4-2, R-10	해당
51-11-02	폐 흡수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3	폐 활성탄	R-1-1, R-3-4, R-4-5, R-10	해당 없음
		R-3-5, R-4-2, R-8-2, R-10	해당
51-12	폐 석고 및 폐 석회		
51-12-01	폐 석고	R-1-1, R-3-2, R-3-3, R-3-4	해당 없음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2-02	폐 석회	R-1-1	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R-4-5, R-10	해당 없음
		R-4-2, R-8-2, R-10	해당
51-13-03	석탄재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10	해당
51-14	폐 석재류		
51-14-01	폐 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 분을 포함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4-02	폐 석재	R-1-1, R-2-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R-1-2, R-2-1, R-2-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3-4, R-4-4, R-4-5, R-9-1, R-9-3, R-10	
		R-4-2, R-8-1, R-8-2, R-10	해당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 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R-3-3,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R-3-4, R-4-8, R-9-4, R-4-2,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4	폐패각	R-1-2, R-2-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7-2, R-10	해당
51-17-05	폐모피류	R-1-1,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10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2-2,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7	동물털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10	해당
51-17-08	동물성유지류	R-3-3,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1	주정박	R-5-3, R-9-1, R-9-3,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3	유박유잔재물	R-3-3, R-5-3, R-9-1, R-9-3,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4	초분류	R-1-2, R-5-3, R-6-1,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7-25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51-17-26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9-1, R-9-5, R-10	
51-17-27	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5, R-5-1, R-5-2, R-5-4, R-6-1, R-8-2, R-10	해당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R-4-8,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	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	해당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20-21	임목 폐목재(건설공사·산지 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 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 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3	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 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4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 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 을 포함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5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 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하 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 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 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 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7	폐가구류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8-1, R-8-2, R-9-1, R-9-3, R-10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1-02	건설폐토석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R-4-2, R-10	해당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R-1-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R-4-2, R-10	해당
51-24-00	폐벽돌	R-1, R-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5-00	폐블록	R-1, R-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6-00	폐기와	R-1, R-2,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2	폐합성섬유	R-1-1, R-2-2, R-3-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R-8-1, R-8-2, R-10	
51-27-03	폐의류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99	그 밖의 폐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2	폐종이류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3	폐벽지	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2	비철금속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R-2-1,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R-2-1,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3	페스마트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4	폐유리섬유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5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 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1, R-4-2, R-10	해당
51-30-99	그 밖의 폐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1-00	페타일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2-00	페보드류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3-00	페판넬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5-00	페전주(페애자, 페근가 및 페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R-3-1,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36	페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립	R-4-2, R-4-3, R-4-4, R-4-7, R-10	해당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R-4-2, R-4-3, R-4-4, R-4-7, R-10	해당
51-37	페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페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2	자동차회수페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R-4-9,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	해당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6-1, R-10	해당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 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 다)	R-4-9,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 리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8-2, R-9-2, R-10	해당
51-39-00	폐사료	R-3-3, R-3-4, R-5-3, R-10	해당 없음
		R-5-1, R-9-4, R-10	해당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51-41	폐전지류		
51-41-01	폐일차전지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 스트·태양광 폐패널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 수·화재·변형·파손 등이	R-2-1, R-2-2, R-3-1, R-3-2, R-3-3, R-4-1,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10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 하는 것을 포함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8	폐연료전지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2-00	폐의약품류	재활용금지	
51-43-00	폐흑연가루	R-1-1, R-2-1,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분진을 말한다)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R-3-1, R-3-2, R-3-3, R-9-2,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5-02	폐차부품류	R-1-1, R-2-1	해당 없음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재활용 금지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R-3-3, R-9-1, R-10	해당 없음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R-5-1, R-5-2, R-5-4, R-6-1, R-9-3, R-9-4, R-10	해당 없음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R-3-3,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R-3-3, R-4-1, R-10	해당 없음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10	해당
91-06-03	폐합성고무류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7-01	유리병	R-2-1, R-3-3, R-4-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91-07-02	폐유리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 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 한다)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 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0-04	폐가구류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R-4-2, R-10	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R-4-2, R-10	해당 없음
		R-7-1, R-10	해당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R-3-1, R-3-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10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	폐전지류	R-3-1, R-3-3, R-10	해당 없음
91-15-00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 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R-3-3,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2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4-5, R-8-2, R-9-1, R-10	해당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R-3-3, R-10	해당 없음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19-00	폐소화기류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4-1, R-4-4, R-5-1, R-10	해당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R-3-3, R-4-3, R-10	해당 없음
91-21-02	합성수지 컵	R-3-3, R-4-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21-03	금속 컵	R-3-3, R-4-1, R-10	해당 없음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다. 일반기계기사 1명
-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 다. 토목기사 1명
- 라.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 라.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최대 적재량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과정에서 흘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9)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1.9.29>

나)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7) 1)부터 6)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4.1.17>
-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헝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삭제 <2011.9.29>
- 7) 삭제 <2011.9.29>
-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

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페벽돌, 페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야 한다.
-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

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흘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재질의 팔레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라) 제초, 전정(剪定), 이식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분류, 나뭇가지 및 그 부산물을 일련의 작업을 마치기 전에 사업장 내에 쌓아두

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속성방 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 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를 보관하는 경우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 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 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 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 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 독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 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발생일시 (연/월/일)	발생량 (kg)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7)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 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 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 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9) 삭제 <2021. 7. 6.>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

용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하) 폐의약품은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폐유독물질의 수집·운반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배관을 통해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사고 시 폐유독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또는 응급조치 장비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

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폐유독물질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폐유독물질은 해당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된 폐유독물질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해야 한다.

(2)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유독물질이 담긴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導電)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고온 등 온도변화로 인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될 수 있는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 탱크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운반해야 한다.

9)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거일자	
배출자명	
운반자명	
처리자명	

나. 보관의 경우

-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훔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 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10) 폐유독물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폐유독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혼합 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관시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원활히 배출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보관시설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채광설비 또는 조명설비를 갖추야 한다.

마) 자연발화성 폐유독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습도와 온도를 낮추거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11) 삭제 <2021. 7. 6.>
- 12) 삭제 <2021. 7. 6.>
-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와 혼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젠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젠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젠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마) 삭제 <2011.9.29>

(바) 삭제 <2011.9.29>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페레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페레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m³)	
매립면적(m²)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젠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m³)	
매립면적(m²)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거) 폐유독물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4) 매립처분하여야 한다(내화성 세라믹섬유만 해당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여야 한다.
-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2)에 따라 매립할 수 있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 1) 삭제 <2011.9.29>
-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의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5) 삭제 <2008.8.4>

6) 삭제 <2008.8.4>

7) 삭제 <2008.8.4>

8) 삭제 <2008.8.4>

9) 삭제 <2008.8.4>

라.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의료폐기물은 흘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5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 나)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제2호가목2)바)(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11) 삭제 <2025. 3. 17.>

6. 폐기물수집·운반중

-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체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4)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마.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아.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 일자와 양,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 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가전제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는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2)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3)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바. 별표 4의2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골재 제품을 제조해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1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1-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3) 반드시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나) R-1-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폐기물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4)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폐철도목재받침목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은 표면에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

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R-2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2-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드럼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황산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황산이 함유된 폐축전지를 수리·수선해 관련 품질 규격과 성능에 적합한 축전지로 재사용해야 한다.
- (5) 삭제 <2020. 5. 27.>

나) R-2-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드럼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폐철도목재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반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폐철도콘크리트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중장비 등 반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 (5) 커피찌꺼기를 축사 깔개 또는 분뇨처리장 등의 수분조절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분함량 2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나.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3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3-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

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3) 폐촉매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중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산화물 중 오산화바나듐(V_2O_5)의 경우

① 바나듐: 무게비율 15.0퍼센트 이상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산화물 중 삼산화몰리브덴(MoO_3)의 경우

① 몰리브덴: 무게비율 30.0퍼센트 이상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R-3-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폐촉매에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나)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한 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의 결과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

②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㉔ 폐지를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3퍼센트 이하

㉕ 폐지를 ㉔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5퍼센트 이하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열분해유는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0.15퍼센트 이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이하 "친환경정제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

(다) 회분(灰分: 유기질을 연소시켜 재로 만든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무게비율로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무게비율로 0.2퍼센트 이하(친환경정제원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선별·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윤활유 또는 정제연료유(폐유를 별표 4의2 제5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폐윤활유는 제2호나목2)가)(2)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제한 후 용제 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정제연료유는 용제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처리되는 정제연료유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5) 리튬계 폐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또는 구동용 폐이차전지(재제조·재사용한 후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과 배터리·양극재 등의 제조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금속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폐이차전지에서 양극재·전해질·음극재를 최대한 분리·회수해

야 하고, 결합재·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는 제거해야 한다.

(나) 파쇄, 분쇄 등의 공정에서 나온 물질 외의 물질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유해물질 함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내여야 하고,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니켈 함량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분석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른다.

(라)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되 별도로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폐기물을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2)의 열분해유를 제외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증류·추출·여과 등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을 거쳐 제2호마목 2)가)(2)(가)의 기준(①, ④ 및 ⑨는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라) R-3-4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되,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밖에 해당 원료물질을 관리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마) R-3-5 유형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③ 그 외의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입도(粒度)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한국산업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
도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비산재, 바닥재 등 소각재와 그 잔재물이나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
(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
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가) 강열감량(強熱減量)은 5.0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1.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을 따른다.

2. 고화제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는 소각재 및 그 화합물과 다른 원료물질을 혼합하여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실험한 결과 기준 농도 이내이면 용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보크사이트 잔재물 등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의 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따른 요업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도록 소각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7) 정수처리오니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하는 정수처리오니는 (11)(나)②에서 정한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된 요업제품은 (6)(가)의 용출기준과 (나)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소성과정을 거쳐 폐패각을 가공한 폐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패각 분말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6)(나)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이내

(나)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9)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라)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0) 폐석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시멘트 응결지연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무수황산: 무게비율 38.0퍼센트 이상

(나) 수용성 인산: 무게비율 0.1퍼센트 미만

(다)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철 대체원료의 경우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㉔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㉕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㉖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㉗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㉘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③ 제철소의 폐기물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및 오니(습식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서 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㉔ 납: 킬로그램 당 4,000밀리그램 미만

㉕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㉖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㉗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㉘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12)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실리카폼)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만을 재활용 할 수 있다.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14) 커피찌꺼기를 점토로 재활용하여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제2호나목2)가)(6)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커피찌꺼기의 사용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나) R-4-5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철도목재반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 성형탄(成型炭)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14호에 따른 성형숯의 사용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3) 톱밥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폐목재·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4) 커피찌꺼기를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R-4-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생윤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폐아이스프로필알콜을 제외한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을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업용으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납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나) 비소와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다) 수은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라) 카드뮴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마) 크롬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바) 증발찌꺼기: 무게 비율로 0.1퍼센트 이하

(3) 폐유기용제 중 폐아이스프로필알콜(프로판-2-올)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스프로필알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공된 정제아이스프로필알콜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함량: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나) 수분: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다) 증발찌꺼기: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나목4)의 공업용 도료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산, 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산, 폐알칼리

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제조한 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처리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오염물질 중 수처리제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는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3)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마) 침출수처리시설

(4)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리, 혼합,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부유물질(SS) 5,000mg/L 이하

(나) 노르말헥산(N-Hexan) 1,000mg/L 이하

(다) 총질소(T-N) 1,000mg/L 이하

(라) 총인 400mg/L 이하

(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000mg/L 이상

(바)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나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사)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제지슬러지를 소각한 분말형태의 소각재를 산성폐수응집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량기준 40퍼센트 미만의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마

그네슘 등 알칼리성 분말과 혼합하여 pH 12.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하수처리오니를 오·폐수 처리용 담체(擔體)로 재활용하는 경우 소성·소결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바) R-4-10 유형의 재활용 기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의 pharm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1) R-5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5-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R-5-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어류 등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어류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료제조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 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양식 어류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4)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는 제초한 곳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없이 쪼갬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R-6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6-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R-6-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녹화토를 생산하는 경우 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부속공정을 거쳐야 한다.

-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75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

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무기성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및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4) 폐석재의 경우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5)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제2호나목2)가)(5)(나)의 기준(염소화합물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 (7) 성토재 등(제14조의5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기간 및 성토재 등의 매립 종료 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까지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 등을 측정(석탄재에 일반토사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01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의 수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R-7-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공유수면은 바다만 해당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과 매립면허 또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 (3) 폐패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해야 하며,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폐석고·폐석회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적절하게 혼합·중화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 혼합·중화하는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 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는 80퍼센트, 폐석고는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5) 공유수면의 성토재나 뒷채움재로 재활용한 지역의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7)의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일반토사와 혼합한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고화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 투수계수: 1.0×10^{-7} cm/sec 이상 1.0×10^{-3} cm/sec 이하

㉣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

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 ② 그 밖에 복토재로의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②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승인·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폐석회, 폐석고를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나) 선별·파쇄 등의 중간 처리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여 다지는 등의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 ①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산에서 채석 시 또는 골재[「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바다골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다)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한 골재

- (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와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2)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 (4)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오염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입폐기물 및 지하수, 지표수 등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기관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분기마다 1회 이상 (3)에 따른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하는 기간에는 매분기별 1회, 재활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5년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질 등을 분석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 (5) (3) 및 (4)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6)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撒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R-7-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하 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점토점결 폐주물사나 단일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로서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주물사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려는 지역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석유저장탱크의 하부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사에 한정한다.

(나)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2)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개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기성오니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토사류와 혼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7)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8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8-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가)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이하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이하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R-8-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R-9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9-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유를 이용하여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화시켜야 한다.

(나) 유화정제연료유(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다)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폐유나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정제 연료유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가)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

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 ②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 ③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④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⑥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⑨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3)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켜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폐페인트 및 폐락커 혼합물, 할로젠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로 한정하며,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①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 ②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

(나)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 ②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 ③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 ④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 ⑤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 ⑥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 ⑦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⑧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R-9-3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페타이어 및 폐목재류 등을 이용하여 열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스·유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한 유류는 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폐철도목재반침목은 절단,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된 것만 사용하여 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②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③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④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 (4) 음식물류폐기물은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을 거쳐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R-9-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연료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2)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의 저위발열량(「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3) 연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과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목 상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가공하여 혼합할 수 있다.

(4) 가공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6)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바. 제품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R-10-1 유형의 재활용 기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적합한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나)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라)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

마) 침출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통해 침출수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고화·고형화·안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토양오염물질: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

- 1)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 2)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내
- 3)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 4)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 5) 침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
- 6)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

2.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가. 공통사항

- 1) 영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이하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이 지하로 침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을 보관·저장·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바닥 포장, 유출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분말·미립자 형태의 고상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을 탱크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춘 탱크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탱크나 용기 등이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4)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5) 유해폐기물은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폭발, 유해가스 발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화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별사항

- 1)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분리·보관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산화제와 혼합·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폭발이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화재가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 등 발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금수성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등 물이나 증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산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연물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과열·충격·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용출독성 또는 생태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 7)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은 내부식성을 갖는 용기에 보관하고,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재활용 대상 부지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이물질 등을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 나) 혼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 또는 유·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혼합해야 한다.
 - 다)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한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이후 지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과의 혼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비산, 누·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마)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부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염 등의 영향이 없도록 혼합·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바) 고화제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고화처리물의 건조·양생 등 안정화기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1. 공통 사항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 재활용 시설 및 공정, 재활용 대상 부지(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 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시연공정 또는 대체 공정을 포함한다)에서 대기·수질·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재활용 대상 부지가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5)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7)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지역

나.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출시험 및 대상 부지의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과 대상 부지 토양과의 반응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분석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분석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바. 재활용하려는 부지의 생물생장 및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목에 따라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대상 부지의 지질 현황, 재활용 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통보해야 한다.

아.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미만이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대상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명	수량
폭발성		시간·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충격·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1식 이상
인화성(액상)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인화성(고상)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1식 이상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1식 이상
산화성(액상)		시간·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산화성(고상)		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용출 독성	무기 물질류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유기 물 질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특성(용출독성은 제외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대행업 등록을 한 자(생태독성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장비명	수량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정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1식 이상
오염물질 등의 이동·흡착·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1식 이상

2.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보건, 환경과학,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화학, 안전공학, 공업화학, 토목, 토목시공, 응용지질 관련 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관련 학과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

(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다음의 문안을 시멘트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기한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본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 대체원료: • 보조연료:	

비 고

- 활자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QR 코드는 최신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로 연결되도록 한다.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용도는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구분하고,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 및 분류번호(00-00)를 표기한다.
- 문안은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개정 2025. 10.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
(제17조의4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다. 폐기물 배출자 등이 자체 관리 및 위탁 처리 참고용으로 폐기물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
 -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조건,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 다. 시약소모대장
 - 라. 폐기물분석결과서 발송대장
 -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등록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분야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를 중복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두 분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5.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분석 의뢰를 거부하거나 분석 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2. 평가기준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배 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15
5)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오차율 평가	40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평 가 기 준	배 점
1) 기술인력의 운영·관리	20
2) 보유시설의 운영·관리	15
3) 측정분석 장비의 운영·관리	15
4) 시료채취 및 보관의 운영·관리	10
5) 표준물질 및 시약의 운영·관리	20
6) 자료의 보관 및 운영·관리	20

3. 평가방법

-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컴퓨터
 - 나. 이동형 통신수단
 -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 가. 수집·운반하는 자: 수집·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

1.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은 전자태그, 비콘태그, 태그 리더기 등 무선주파수 인식장비(이하 “무선주파수인식장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사항을 장애복구 후 입력·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4.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무선주파수인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의 규격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

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

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세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
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
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
류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
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 (1)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 (2)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다만,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만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축매,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회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분쇄·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분쇄·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비 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대형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별표 5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1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2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

-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 (2) (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 (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 (3) (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 또는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 (2) (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과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비축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잔존용량 및 잔존수명 등을 측정해야 한다.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추는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인쇄설비
- 2) 재단·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절단설비
- 2) 접합설비
- 3) 인쇄설비
- 4) 포장설비

다.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용융·사출·성형설비
- 2) 인쇄설비

비고: 인쇄설비를 전용용기의 인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쇄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기의 뚜껑은 겉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겉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 한다.

3. 규격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점의 필름으로 0.03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cm²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cm 이상이어야 한다.
- 마.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cm² 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mm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색상 및 표시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오렌지색,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 나.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는 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 뒷면,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업 등록사항,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재활용하는 태반을 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재질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개별사항

1) 골판지류 용기

- 가) 전상과열강도, 수직압축강도, 발수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음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 다)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전성시험, 낙하안전성시험은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 가)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
- 나)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다)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
- 라)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전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 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마)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18±2 ℃)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 바) 손잡이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사)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 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아)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
- 자)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체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저온낙하안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개정 2025. 10. 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한국환경공단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폐기물이 훔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회수·이용률의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 가)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분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바닥재의 강열감량(強熱減量)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 (6)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 (5)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소각시설의 배관설비(저장 또는 보관 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연결된 배관설비로 한정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가) 배관의 재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배관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유독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배관의 덮개·플랜지(flange)·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폐유독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이 서로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라)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마)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및 폭발성 폐유독물질을 연소실로 이송하는 배관설비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류방지밸브 등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배관 내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폐유독물질이 혼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폐유독물질의 보관탱크에는 내부물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습도계, 액위(液位)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 소각시설

-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분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멸균분쇄시설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분방식이어야 하며, 처분일자·처분 온도·처분입력 및 처분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 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 ± 5 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照射)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혼합 및 체류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안정화시설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 <2011.9.27>

다) 삭제 <2011.9.29>

라) 삭제 <2011.9.29>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 3)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독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독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 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분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 10)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text{kg}/\text{cm}^2$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text{kg}/\text{cm}^2$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強度)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용 용 지 수		g/10min	1.0 미만	
밀 도		g/cm ³	0.940 이상	
카 본 블 랙 함 량		%	2.0 ~ 3.0	
카 본 블 랙 분 산 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중 80% 이상이 1급 이나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cm ²	150 이상	
	파단인장강도	kgf/cm ²	270 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 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 이상	
인 열 강 도		kgf/cm	130 이상	
깨 뚫 림 강 도		kgf/cm	320 이상	
저 온 취 약 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 수 안 정 성		%	각 방향 ±2 이하	
내 환 경 응 력 균 열 성		hr	1,500 이상	
산 화 유 도 시간(OIT)	표 준 조 건	min	100 이상	표준·가압 조건 중 택일
	가 압 조 건	min	400 이상	
열 노 화 후 OIT유지율	표 준 조 건	%	55 이상	표준·가압 조건 중 택일
	가 압 조 건	%	80 이상	
자외선처리후 OIT유지율	가 압 조 건	%	60 이상	
접합부강도	전 단 강 도	kgf/cm ²	135 이상	
	박 리 강 도	kgf/cm ²	97 이상	
비 고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6000)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 중 4개 이상이 200시간 내에 파단(破斷)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透過能)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인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3)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透水係數)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4)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空隙)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 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할 것

(6)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

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인근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바) 매립시설의 주입관로[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이하 “침출수 등”이라 한다)를 매립시설에 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각각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사)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층의 적정 함수율(含水率)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관로, 주입펌프, 함수율 측정기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이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1)부터 (4)까지의 방법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최종복토층 아래의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전·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2) 매립층에는 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침출수 등의 주입에 따라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립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우레탄·에폭시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

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재활용시설은 지붕과 벽면이 있고 집진설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가전제품 중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량 및 보관량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 시 발생하는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및 수은회수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재활용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삭제 <2025. 3. 17.>

나. 기계적 재활용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폐철도목재받침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 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용해시설은 용융·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재활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세척시설

가)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철도목재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을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시설

-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반응시설

-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응집·침전시설

-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4) 열분해시설

- 가)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로,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열분해로·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 마) 열분해로·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 바) 열분해로·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 사) 열분해로는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아) 폐기물 투입구·잔재물 배출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차)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 또는 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라.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및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부숙·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렁이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부숙토 생산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잉여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

-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

야 한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14)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15)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6)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용해로

-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소각열회수시설

- 1)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열분해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진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6)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폐기물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연소실·열분해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연소실·열분해실의 외부는 철판을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칠하거나 단열처리 또는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회전식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들어오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 섭씨 250도 이하)여야 한다.
- 1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1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 이상)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1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재활용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1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여야 하며, 이 경우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6)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7)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소각재를 제거할 때 재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8)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열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설비(생산되는 에너지를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너지 이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21)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설비에는 내부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은회수시설

- 1) 섭씨 600도 이상인 상태에서 수은폐기물을 배소(焙燒)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수은 회수과정에서 감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소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화된 상태에서 수은을 회수하는 응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3) 수은회수 공정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5) 수은회수 과정에서 수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출 시 필요한 수은회수통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선별시설

- 1) 분리선별, 비중차(比重差)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光學)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2) 생활폐기물의 선별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나)부터 라)까지의 기준은 선별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광학선별장치를 갖추기 곤란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 고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 폐유리,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패각,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

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에 따른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3호마목 중 (1), (5), (7)부터 (9)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소각시설

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흘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소각열을 회수·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정기검사	공통사항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고온소각시설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배관의 재료, 강도, 두께 ○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장치

2. 매립시설

구 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차 단 형 매립시설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관 리 형 매립시설	○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 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내용 ○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 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 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안정성
정기검사	차 단 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관 리 형 매립시설	○ 소화장비의 설치·관리실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 ○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

		부 ○ 복토두께 ○ 침출수위 ○ 매립층의 함수율 ○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사용종료·폐쇄 검사	차단형 매립 시설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관리형 매립 시설	○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차단층·배수층·식생대층) 설치상태 ○침하에 대한 안정성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사후관리 정기검사	차단형 매립 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밀폐시설 관리 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관리형 매립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시설	○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방역 실태
--	----	---

비 고: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멸균분쇄시설

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의 적절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정기검사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 처리능력의 적절성 ☐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이송시설의 적절성 및 안정성 ☐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효율 ☐ 파쇄시설의 설치 여부 및 파쇄능력 ☐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 혼합시설의 적절 여부 ☐ 가열·건조시설의 적절 여부 ☐ 사료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절 여부 ☐ 발효시설의 구조·기능 및 적절 여부 ☐ 후부숙(後腐熟)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 소화시설	☐ 산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메탄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 부숙장치의 구조·기능 및 적절성 ☐ 부숙장치의 성능 ☐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 탄화·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 탄화·건조장치의 성능 ☐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 생산시설	☐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 부숙공정의 적절 여부 ☐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 지렁이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동애등에 분변토	☐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생산시설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培地配合施設)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입병(入瓶)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접종기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폐배지(廢培地)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정 기 검 사	공 통 사 항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 유지 여부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작동상태 ○선별시설의 작동상태 ○파쇄시설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 설	○가열·건조시설의 작동상태 ○사료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사료화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 설	○탈수·혼합시설의 작동상태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 기 성 소 화 시 설	○산발효시설의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 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속 토 생 산 시 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속공정의 작동상태 ○부속토의 적절성
지 령 이 분 변 토 생 산 시 설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지령이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의 적절성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5. 시멘트 소성로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 연소실 공기나 산소 공급장치 작동상태 ○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내부에 사용한 재료의 적절성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 유입·유출 여부 ○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연소실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

6. 소각열회수시설

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의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의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의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연소실 압력측정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의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흠날림 방지조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에너지 회수 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에너지 이용 또는 공급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의 준수 여부 ○표지판의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의 적절 여부 ○바닥재의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	--

7. 열분해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작동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 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 투입구·잔재물 배출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유출 방지 여부 ○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방법 준수 여부 ○ 열분해유, 가스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정기검사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의 적절성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열분해유, 가스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 법령(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시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3.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관

리기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 검사항목 외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설 승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검사나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폐쇄한 매립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법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사용종료·폐쇄 검사의 경우는 검사일 이전 1년) 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보건,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시설·장비 요건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2) 장비	가) 광파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로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	--

마. 검사대상시설이 열분해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실험실 및 장비·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 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
 - 라.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유지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유량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매립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파내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

2) 폐기물을 파내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차수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파낸 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누출·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별표 8 제4호다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가전제품 등의 보관·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냉매물질, 형광물질 등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하.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장일 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해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매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실내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3) 삭제 <2008.1.28>
- (4)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ppm(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분용량(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1일 단위로 산정하되, 연속식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 (가)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분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분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나)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 ± 5 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혼합 및 체류하여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검사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하거나 연속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5)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 3) 화학적 처분시설
 - 가) 고형화·고화 시설
 -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반응시설
 - (1)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 4) 생물학적 처분시설
 - 가) 소멸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1.9.27>
 - (3)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헝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200	30
가지역	50	300	50
나지역	70	40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구분에 따른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추출 물 질 함 유 량		페놀류 함유량 (mg/L)	시 안 함유량 (mg/L)	크로뮴 함유량 (mg/L)	용해성 철 함유량 (mg/L)	아 연 함유량 (mg/L)	구 리 함유량 (mg/L)	카드뮴 함유량 (mg/L)	수 은 함유량 (mg/L)	유기인 함유량 (mg/L)
		광유류 (mg/L)	동식물 유지류 (mg/L)									
청정 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항 목 지 역	비소 함유량 (mg/L)	납 함 유량 (mg/L)	6가 크로뮴 (Cr6+) 함유량 (mg/L)	용해성 망간 함유량 (mg/L)	플루오린 (불소) 함유량 (mg/L)	폴리클 로리네 이티드 비페닐 (PCB) 함유량 (mg/L)	총대장 균군수 (군수 /mL)	색도 (도)	총 질 소 (mg /L)	디에 틸헥 실프 탈레 이트 (mg/L)	셀레 늄 (mg/ L)	총 인 (mg /L)	트리클 로로에 틸렌 (mg/L)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mg/L)
청정 지역	0.1이하	0.2이하	0.1이하	2이하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100이하	0.02이하	0.1이하	4이하	0.06이하	0.02이하
가 지역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5이하	3,000이하	300이하	150이하	0.2이하	1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나 지역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5이하	3,000이하	300이하	200이하	0.2이하	1이하	8이하	0.3이하	0.1이하

비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mg/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mg/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침출수를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그 인정 절차 및 희석 시 준수사항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라)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양)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 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가 설치된 매립시설은 5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강수·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문에 따른 수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수위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승인 절차, 이행 결과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킴포지트·지오토텍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페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카)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1) 매립작업이 끝난 후에는 투수성이 낮은 흙이나 별표 4의2 제3호나 목1) 또는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복토재로 재활용한 제품(이하 "재활용복토재"라 한다)을 사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일복토 또는 중간복토를 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은 흙만을 사용해야 한다.

(가) 일일복토: (나)에 따라 중간복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작업이 끝난 후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투수성이 낮은 흙 또는 재활용복토재를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야 한다. 다만, 투수성이 낮은 흙 또는 재활용복토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대체복토재"라 한다)을 사용하여 일일복토 할 수 있으며,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대체복토재 사용 시 복토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중간복토: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투수성이 낮은 흙 또는 재활용복토재를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중 소각재·도자기조각·광채류·폐석고·폐석회·폐폐각·석탄재·연탄재·폐유리·폐석분토사·폐석재·석재 또는 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악취가 발생하거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

(나)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

(3) 삭제 <2026. 3. 26.>

(4)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6)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다만, 타)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킴포지트·지오투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 (7) (6)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은 식생대층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식생대층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소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를 매립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 (나) 매립 대상 폐기물을 별표 4의2 제2호나목2) 또는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유형으로 재활용하여 매립시설 상부에 60센티미터 이상 매립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 (8) (7)(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 식생대층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기 전까지 공기 중에 노출된 매립층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타)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파)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 하)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

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거)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다음 (1)부터 (6)까지의 기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로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 함수율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침출수 등의 주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6)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별지 제4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너)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한다.

다. 재활용시설의 경우

1) 기계적 재활용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 올 때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세척시설

- (1) 세척 과정에 사용된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세척에 사용된 세척수에 혼입된 폐목재 찌꺼기와 기름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열분해시설

- (1) 열분해로는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 (2)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 또는 가스의 회수량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3) 열분해시설은 발생하는 열분해유, 가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가)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사료화·퇴비화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사료화·퇴비화,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 및 부숙·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헝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소성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

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총탄화수소(THC)를 4시간 평균 6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3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용해로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

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가)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만을 같은 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섭씨 600도,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바)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사)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온수·증기 등의 회수열을 열원 또는 전기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용량(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1일 단위로 산정하되,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에는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수은회수시설

가) 수은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수은함유폐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나) 수은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다)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2호다목4)

나)부터 바)까지 및 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08.8.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측정주기

가.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2)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나.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 3)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 4)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나.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 1) 대기: 다이옥신, 푸란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나. 조사지점

-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 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 2)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
- 3)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 4)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한다.
- 5)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다.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비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지점 등이 제2호에 따른 조사 시기, 조사 지점 및 측정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1호나목1)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한 1회 측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가.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 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 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중 1명 이상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다만, 사료화·퇴비화시설인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마. 그 밖의 시설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제49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점 검 항 목
1. 중간처분시설	
가. 공통사항	☐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 보관시설바닥·주요처분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소각시설 및 고온 열분해시설	☐ 내화물의 파손 여부 ☐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 분진의 흘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시설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아. 탈수시설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자. 건조시설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차. 고형화·고화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안정화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타. 멸균분쇄시설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2. 최종 처분시설	
가. 공통사항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기재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나. 차단형 매립시설	○바닥·외벽 및 내부막의 파손 여부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다. 관리형 매립시설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집수정·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3. 재활용시설	
가. 공통사항	○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 보관시설 바닥·주요 재활용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 동과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 시설	○ 내화물의 파손 여부 ○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 분진의 흘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용해시설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아. 탈수시설	○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자. 건조시설	○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 이물질의 제거 여부 ○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차. 고형화·고화시설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을 안전하게 처분 또 는 재활용할 수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항목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점검항목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5. 10. 1.>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

58조제4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하되, 폐기물 처분업
자인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
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
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5.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
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
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입력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폐철도반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재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폐수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 나.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 다.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라.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폐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9.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또는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을 의복, 침구 또는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가방, 신발 또는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2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 다.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8. 7.>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 관련)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
2.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5. 납 또는 그 화합물
6. 시안화물
7. 폴리카로리네이티드비페닐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독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인원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가. 빗물 배제방법

별표 9 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러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출수를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그 인정 절차 및 희석 시 준수사항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강수·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문에 따른 수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수위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승인 절차, 이행 결과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 6)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침출수 등의 주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7) 별표 9 제2호나목2)자)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침출수 수위와 같은 목 2)라) 및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설치된 유량계와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각각 측정된 유량은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 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 1) 축대벽, 독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전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표수 수질 조사방법

-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3) 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1)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의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가. 제3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8. 3. 3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삭제 <2011.3.31>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000원,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못하게 된 경우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경고	6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 의5제2항제 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 의5제2항제 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 의5제2항제 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 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 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가)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16)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2)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영업 정지 6개월
다)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지정폐기물 외의 사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나) 삭제 <2024. 12. 27.>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정한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마)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 삭제 <2024. 12. 27.>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사)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경우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	경고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 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 월	해당 업체의 폐기 물 반입 및 처리 금지 6개월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누출·유출된 경우 (2) (1) 외의 경우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수집하지 않았거나 60일간 저장·보관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7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 목·마목 및 제3호마 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					

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법 제27조 제2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15호의2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다만,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 5의4 제1호나 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가) 및 나) 외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법 제27조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제2항제4호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등록취소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		지정 취소			

우 나)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 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 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 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 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법 제30조 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 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 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 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 우	법 제30조의 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 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 사기관 지정서에 기 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 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 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의 자에게 다시 의뢰 한 경우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 사기관에 등록된 기 술인력이 직접 폐기 물처리시설 검사업무 를 실시하지 않은 경 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 설에 대해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검사와 사후관 리 정기검사를 연속 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 설치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①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②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
	③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대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⑧ 설 치 예 정 지				
⑨ 보 관 량			⑩ 보관기간	⑪ 수집구역
폐기물 종류	용 적	무 게 (허용 보관량)		
⑫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⑬ 신청(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4항 ☐ 제9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 설치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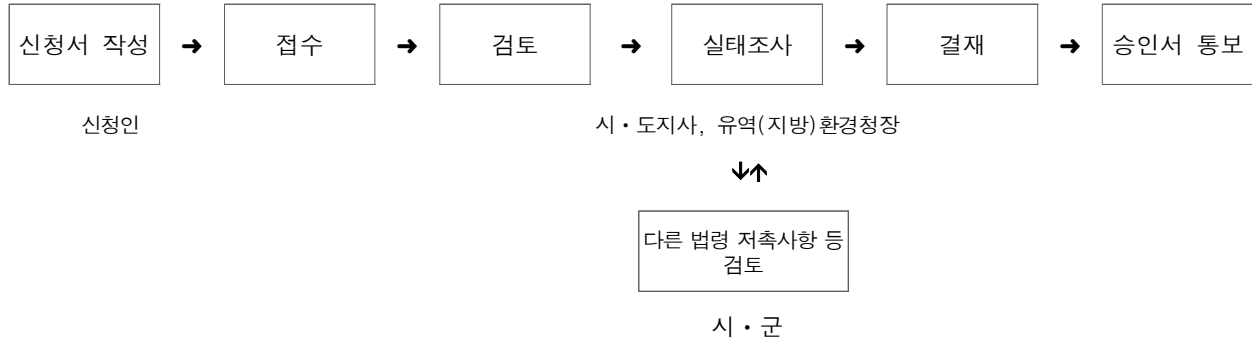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나.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란부터 ⑦란까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번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번호와 신청인의 상호(명칭)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2. ⑨란은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무게(비중 적용하여 산출)를 적습니다.
- 3. ⑩란은 시·도 단위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사 무 실)	(전화번호:)		
설 치 예 정 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내용

보 관 량			보 관 기 간	수 집 구 역
폐기물 종류	용 적	무 게 (허용 보관량)		

승 인 조 건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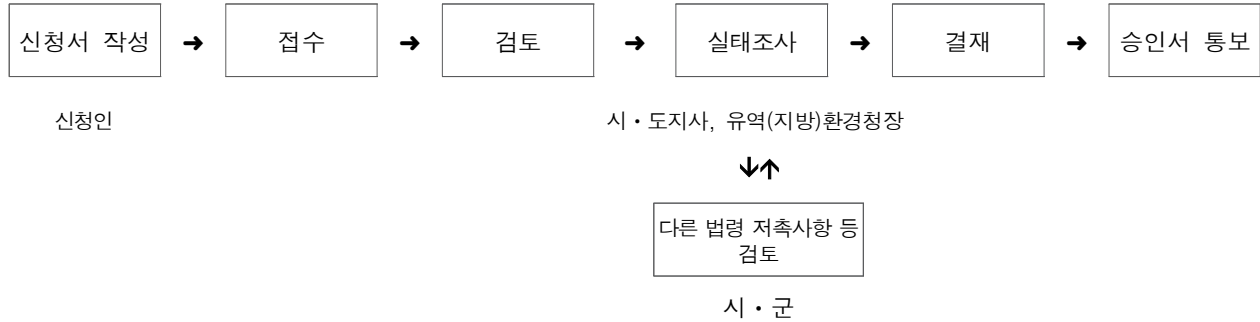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작성방법

- 1. ①란부터 ⑦란까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번호와 신청인의 상호(명칭)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2. ⑨란은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명(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창고, 냉동시설, 보관장소)과 용적 및 무게(비중 적용하여 산출) 등을 적습니다.
- 3. ⑩란은 시·도 단위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재활용업 허가번호		재활용업 허가기관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시설 설치예정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내용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보관시설종류	용적(㎡)	무게(톤)		
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 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재활용환경성평가 [] 신청서
[]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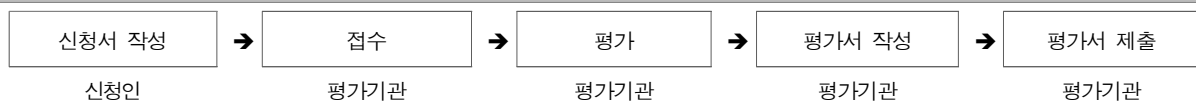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청 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양(톤)
	재활용 장소	소재지	면적(제곱미터)
	재활용 유형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4제1항 [] 제14조의4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 신청 [] 변경신청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의 경우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다.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라.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2.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의 경우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나.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작성방법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인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내용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신청인 전체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국립환경과학원장

발 신 : (기관명)

(대표자)

인

[illegible]

우000-000 / 주소

/ 전화번호()000-0000 / 전송()000-0000

담당부서명

담당자

작성방법

1. 표의 회색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백색의 빈칸만 작성합니다.
2. 실적보고 대상은 ⑩란의 평가완료일이 해당 반기내에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①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②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이 아닌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③란은 재활용사업을 시행할 업체(사업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6. ④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의 경우에만 사업계획에 따라 차후 승인(또는 허가 등)을 받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7. ⑤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8. ⑥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대상부지를,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재활용시설(공정) 등이 설치될 주소를 습니다.
9. ⑦란은 별표 4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양(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단위기간 사용 총량을,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일사용량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⑧란은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유형별 세부분류를 적습니다.
11. ⑨란은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A→B→C'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2. ⑩란은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에만 재활용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13. ⑪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00-00-00'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4. ⑫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내어준 날짜를 '00-00-00'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5. ⑬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등으로 적습니다.
16. ⑭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를 백만원의 단위로 적습니다.
17. ⑮⑯란은 재활용에 사용된 폐기물의 양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청(변경) 내용	대상폐기물	종류		양(톤)		
	재활용 장소	소재지		면적(제곱미터)		
	재활용 유형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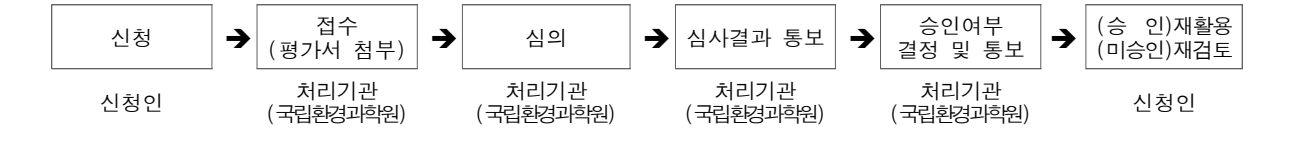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인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변경)내용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신청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1. 상호(명 칭):
2. 성명(대표자):
3. 주 소:
4. 승 인 사 항

대 상 폐 기 물		재 활 용 장 소	
종 류	양 (톤 또는 톤/ 년)	소 재 지	면 적
재활용 유형			
승 인 조 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지정 (변경) 내용	시설		
	장비		
	인력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9제1항

[] 제14조의10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

[] 지정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결 재	→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지정서 교부

제 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소재지 :
4. 시설·장비·기술인력 현황

시설	
장비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용역 원가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및 공과금			
		여비·교통비·통신비			
		기타 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 청 사 유	[]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합니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최근 3개월 간의 해당 분기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신 청 내 용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금액	
	원/세대			원/세대	
	산정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이
한
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년도)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공동주택명(아파트 또는 건물명)		
	⑦ 세대수		⑧ 사용승인일		
	⑨ 주소(배출현장)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정보	⑩ 계약 내용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품목		수거주기	
	⑪ 수탁 처리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허가/신고사항			

⑫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량(kg)

[illegible]

⑬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 현황

구분	수집운반업체명	재활용업체명	처리량(kg)	비고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품목5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주체의 상호(명칭)을 적습니다.
2. ⑦란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만 적습니다.
3. 생활폐기물 수탁처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는 ⑩, ⑪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4. ⑫란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품목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적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변경신고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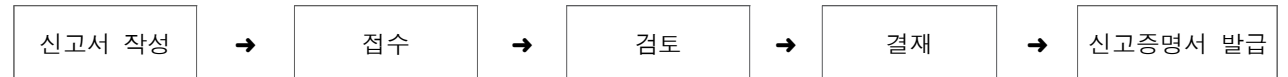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깎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깎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상 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일	kg/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2호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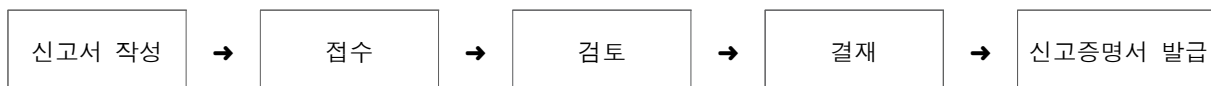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사업장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공동 수집 · 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공동 수집 ·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kg/월	kg/년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년 분기)

정보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사업장)							
클링커 생산량		(톤/분기)			폐기물 사용량		(톤/분기)		
시멘트 생산량		(톤/분기)			폐기물 사용비율		%		
①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② 폐기물 위탁자	폐기물 반입량 (톤/분기)	③ 폐기물 원산지	폐기물 시험 결과				
					납 (mg/kg)	구리 (mg/kg)	카드뮴 (mg/kg)	비소 (mg/kg)	수은 (mg/kg)
계									
대체 원료									
보조 연료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 및 분류번호(00-00-00)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폐기물을 위탁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를 가, 나, 다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란은 폐기물 원산지의 국가명을 적습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 질 · 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 질 · 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보증보험가입()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⑯ 허가 또는 신고 업종	⑰ 영업대상 폐기물	⑱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⑲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⑳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㉑ 수집 · 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m³)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㉒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 (운반)량		
	㉓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m³)					㉔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4) 수탁 확인	㉕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종 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역(지방)환경청장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⑬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⑯란, ⑳란, ㉑란을,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⑰란, ⑱란, ㉒란, ㉓란을,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㉔란, ㉕란, ㉖란, ㉗란을,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㉘란부터 ㉚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㉔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㉕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㉖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㉗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㉘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㉙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리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㉚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㉛란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㉔란, ㉕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㉜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㉝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	처 리 방 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증명을 적습니다.
-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 제1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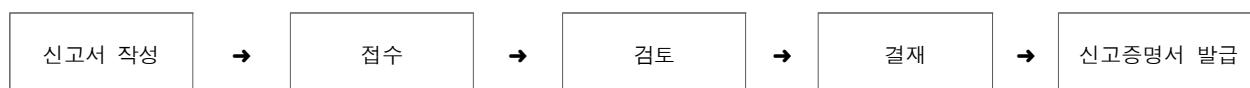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⑪란 및 ⑬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에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⑧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⑨ 폐기물			성질 ·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앞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 ·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illegible]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8.8.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 상태	⑮ 운반계획		⑯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⑰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⑱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 ⑬란은 배출주기를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 ⑯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⑳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출인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⑦ 발생량 (kg/월)	⑧ 성질· 상태	⑨ 처리방법	⑩ 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⑪ 유해물질별 함유량	⑫ 기타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 ⑥란은 폐기물 처리계획서상의 폐기물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⑩란은 폐기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습니다.
-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습니다.
- ⑫란은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⑤ 업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과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변경 지정 10일)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분석책임자	전화번호	
	분석분야	일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석면(□)	
	변경사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의2제1항
 []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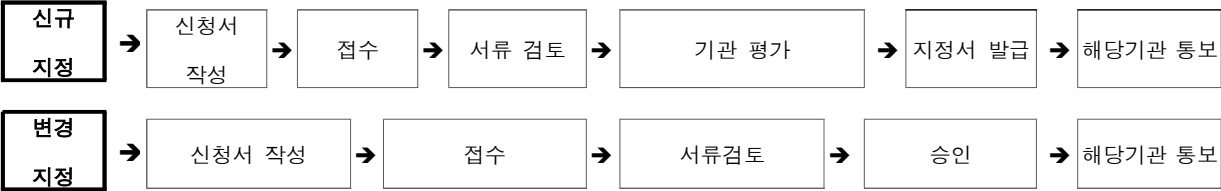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을 포함합니다) 다.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분야 : ○ ○ 분야
5. 시설·장비 내역

시설내역	
장비내역	

위 기관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illegible]

<처분사항>

[illegible]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제 공 자	③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폐 기 물 정 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		
		[]단일 폐기물 []혼합 폐기물				
	⑨ 포장형태	[]용기(재질:) []톤백 []차량직접적재 []기타()				
	⑩ 발생량(톤/년)					
	⑪ 제조공정					
안정성 · 반응성	⑫ 유해특성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비고
		폭발성	[]분석 []자료()			
		인화성	[]분석 []자료()			
		자연발화성	[]분석 []자료()			
		금수성	[]분석 []자료()			
		산화성	[]분석 []자료()			
		부식성	[]분석 []자료()			
		기타	[]분석 []자료()			
⑬ 물리 적 · 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악취			
	수분(%)		비중			
	수소이온농도(pH)		끓는점(℃)			
	녹는점(℃)		발열량			
	점도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기타					

	항목	조사 방법	주요 성분	비고
성분정보	⑭ 유해물질 용출독성	[]분석 []자료()		
	⑮ 유해물질 함량	[]분석 []자료()		
	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분석 []자료()		
⑰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대책	보호구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기타()	
	저장 및 보관방법			
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이상조치	응급조치		
		누설대책		
		화재시의 조치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⑲ 특별 주의사항				
⑳ 그 외 의 정보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공사)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주요 원료·부원료·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과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유해특성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기타 항목은 명시된 유해특성 외에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중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란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어 용출독성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9. ⑮란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작성하며,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0. ⑯란은 폐기물이 리튬,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니켈, 카보닐철 및 아연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1. ⑰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 저장 및 보관방법란은 온도,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12. ⑱란은 응급조치란에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 누설대책란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화재시의 조치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 약품·장비 및 방제요령란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
13. ⑲란은 파쇄금지,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등 폐기물을 보관·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14. ⑳란은 빈용기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 제1쪽 상단의"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담당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① 업 종		② 폐기물의 종류		③ 폐기물 포장형태 및 수량	
		(- -)			
④ 제조공정					
⑤ 원료명 및 사용량 (kg/일 또는 톤/일)					
⑥ 생산품명 및 생산량 (kg/일 또는 톤/일)					
⑦ 물질수지 분석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 제24조제2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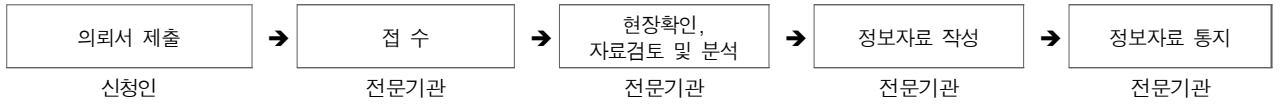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사용 원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가.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나. 변경내용 및 사유 다.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82조제2항에 따 라 기후에너지 환경 부 장 관 이 고시하는 수수 료
------	---	---

작성방법

- ①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③란은 폐기물 배출시 포장형태와 수량을 적습니다.
- ④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
의 투입점과 생산품 및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 ⑤란과 ⑥란은 ④란의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명(원료·부원료·첨가물) 및 사용량과 제품명 및 생산량을 적습니다.
- ⑦란은 ④란, ⑤란, ⑥란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기재하며, 폐기물은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분류번호(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업 소 명)

문서번호

시행일

받음

제 목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

귀 업소가 위탁한 폐기물을 아래 사유로 처리할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위탁현황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수탁량(톤)
(- -)	

2. 처리불가 사유:

3. 처리불가 기간: . . . ~ (일간) . 끝 .

처 리 업 소 명

인

주소

/전화번호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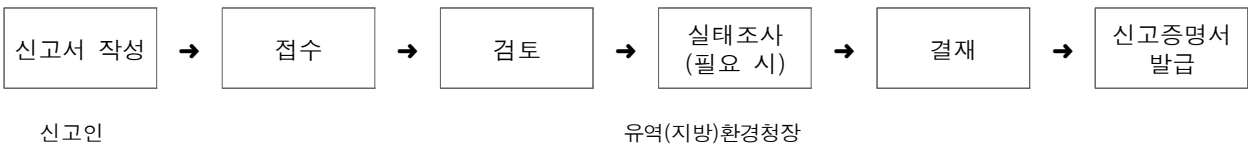
/담당자

[별지 제15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작성요령

- 1.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 3. ⑪란은 폐기물의 수출이 단일수출인지 포괄수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4. ⑫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 5. ⑬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 6.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 7.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
- 8. ⑯란의 운반차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 9.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처리방법란에 따른 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15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첨부서류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을 적은 포괄수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⑨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⑩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⑬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 ⑭란은 폐기물의 수입이 단일수입인지 포괄수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⑮란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⑯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 ⑰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 ⑱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
- ⑲란의 운반차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 ⑳란의 처리구분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

[별지 제15호의4 서식] 삭제 <2017. 10. 19.>

(뒤쪽)

⑥ 수출예정일(수출예정월)		⑦ 국내 선적항			⑧ 수입국(경유국)		⑨ 단일 또는 포괄수출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HSK No. (10자리)	⑬ 수출량 (톤)	⑭ 운반		⑮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 종류	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15호의5 서식] 삭제 <2017. 10. 19.>

(뒤쪽)

[illegible]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8.8.4>

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변경

제출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처리절차

폐기물처리업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8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 허가 [] 제29조제2항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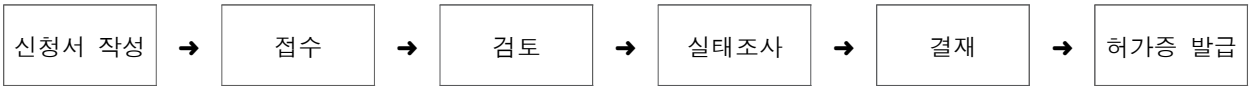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관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관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

작성방법

-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⑩란 및 ⑪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출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시설 · 장비			
영업구역 (생활폐기물만 해당)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적합성확인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전문처리분야	
영업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비	
기술능력	
허용보관량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

허가증

[]	중	간	처	분	업
[]	최	종	처	분	업
[]	중	합	처	분	업
[]	중	간	재	활	용
[]	중	최	종	재	활
[]	중	합	재	활	용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채활용업

[] 최종새활용업

[] 종합새활용업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전문처리분야

영업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 장비

기술능력

허용보관량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 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을 허가합니다.

이
의
의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적합성확인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 최대 보관량	
⑩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 2. ⑧란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 3.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습니다.
- 4.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전용용기 제조업 [] 등 록
 [] 변경등 록 신청서
 [] 변경신고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 ·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조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전용용기 규격 및 제조시설	제조하려는 전용용기 규격		전용용기 제조시설
	종류	원료·재질	시설명 수량(식) 최소 및 최대 생산규격(ℓ)
	봉투형용기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제34조의3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4조의4제2항 에 따라 [] 제34조의4제4항 [] 등록 전용용기 제조업 [] 변경등록 을(를) 신청합니다. [] 변경신고			

$$\frac{1}{\Gamma} \quad \frac{1}{\Gamma + 1} \quad \frac{1}{\Gamma + 2}$$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수수료 등록 : 25,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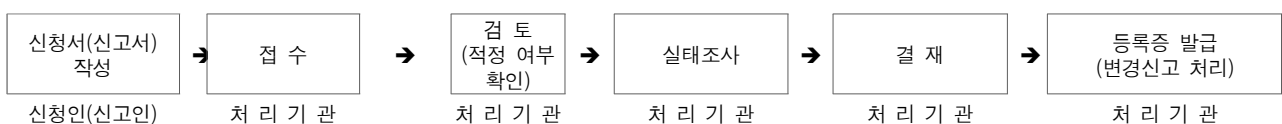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앞쪽)

등록번호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제 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보관창고	소재지				
	규모(㎡)				
등록사항	제조하려는 전용용기 규격		전용용기 제조시설		
	종류	원료·재질	시설명	수량(식)	최소 및 최대 생산 규격(ℓ)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유역 (지 방) 환경 청 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illegible]

<처분사항>

[illegible]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쪽)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제조업등록번호	
	⑤ 주소(제조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검 사 신 청 개 요

⑥ 종류		⑦ 용량(ℓ)	⑧생산일자	⑨검사 희망일자
[]봉투형용기				
[]상자형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⑩구조·규격(cm)	⑪ 원료/재질	공급예정사항	
		⑫공급 예정업소	⑬공급 예정수량(매, 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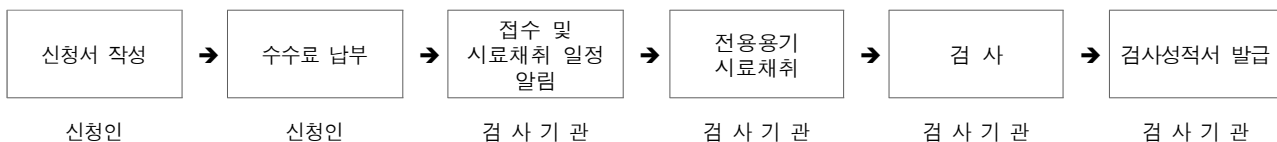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작성요령

1. 전용용기의 종류(봉투형, 골판지류, 합성수지류)별로 전용용기 검사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검사받고자 하는 전용용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 표를 합니다.
3. ⑩란은 전용용기 규격(봉투형의경우 폭(cm)×길이(cm), 상자형용기가 직육면체 모양일 경우 가로(cm)×세로(cm)×높이(cm), 원통형의 경우 지름(cm)×높이(cm), 위·아래 지름이 다를 경우 윗면지름(cm)×아랫면지름(cm)×높이(cm)을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의 원료·재질은 전용용기에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⑫, ⑬란은 공급예정인 업소별 공급 예정량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발급번호 : 검사기관명- 제 호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	
	주 소(사무소)			
검 사 장 소				
검 사 연 월 일				
전 용 용 기 검 사 결 과				
종 류		용량(ℓ)		
생산일자		규격(cm)		
원료/재질		공급 예정업소		
공급예정수량 (매 , 개)		특기사항		
검사결과(합격 , 불합격)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영업 대상 폐기물					
⑧ 허가증	허가번호				
	허가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관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⑥란은 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품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매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 ⑥란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2020년 5월 27일'로 적습니다.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수정 발급

제출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정 50일(변경지정인 경우 10일)
------	------	------	----------------------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 내용	검사대상 시설의 종류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1조의4제1항
[] 제41조의5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 지정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라.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서류 및 현장)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기술인력	
시설	
장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변경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처분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검사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 지정 연월일		검사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기술인력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발급 연월일	
시설 보유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장비 의 종류 및 규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재발급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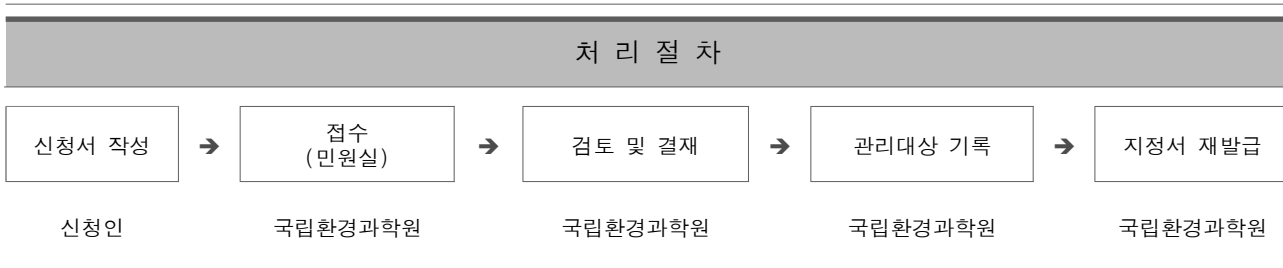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제출인	기관명(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시험·연구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간)
---------	---------------------

시설사용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간)
--------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kg/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연)	방지시설명	시설설치비용 (백만원)

시험·연구목적

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업소	폐기물 종류	반입량(kg/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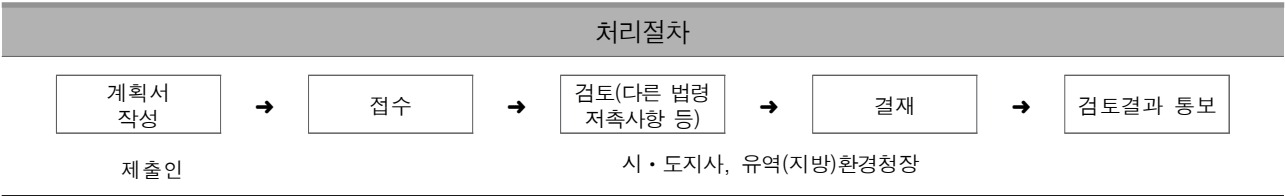
폐기물 보관방법

설치자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6호의2, ☐ 제8호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 (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 비용(백만원)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9조제1항 에 따라
☐ 제39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서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서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① 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 ⑥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 ⑪ 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E[승인서 발급]
    F[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C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도지사

승인번호 제 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업 종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내용				
처분시설명 또는 재 활용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방지시설명
승 인 조 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 (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0조제1항 에 따라
[] 제40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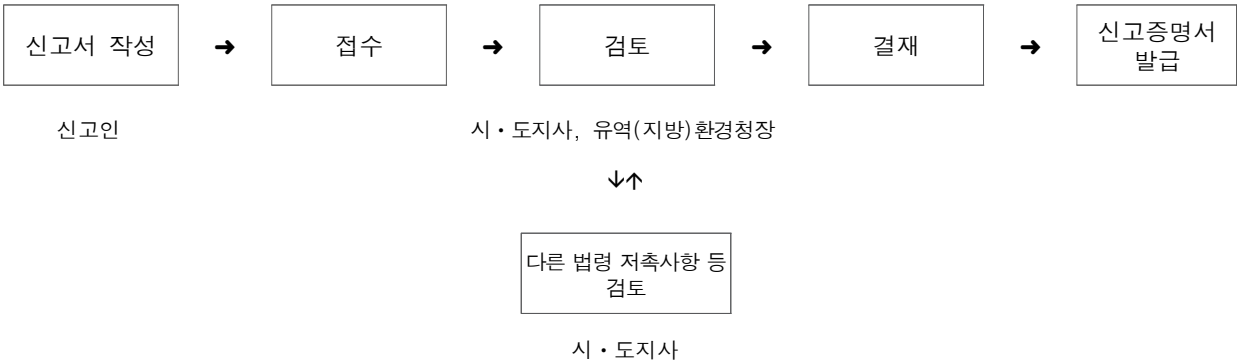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증명을 적습니다.
- 3.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업 종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내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 용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방지시설명			
신고접수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업종	⑧ 승인·허가(관리) 번호	제 호
------	----------------	-----

사용개시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⑨ 시설명	⑩ 시설규격 (능력)	⑪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열분해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 2.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 3. ⑧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4.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매립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업 종	⑧ 승인·허가번호	제 호
-------	-----------	-----

⑨ 사용개시 예정일	⑩ 사용종료 예정일
------------	------------

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

⑪ 시설 종류	⑫ 승인·허가내용		⑬ 사용개시신고내용		⑭ 매립예정량(톤/일)	⑮ 최종복토 예정면적 (㎡)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매립시설의 소재지를 적되,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⑬란의 사용개시신고 면적 및 용량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을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습니다.
6. ⑫란은 승인·허가받은 총 매립면적(실제 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사용하려는 경우에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 및 용량을 적고, 승인·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8. ⑭란은 일일 매립예상량을 적습니다.
9. ⑮란은 매립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최종복토 예정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설치
[] 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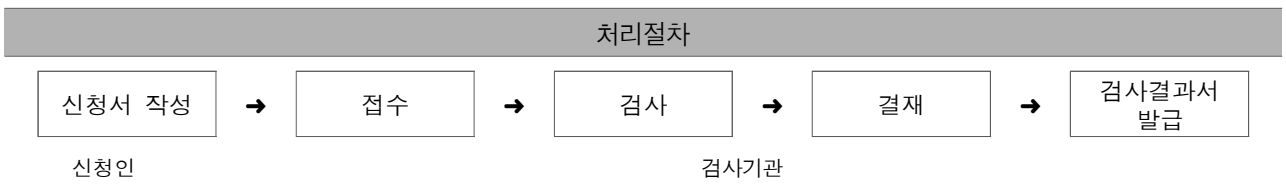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치자	① 상호		② 업종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⑥ 검사를 받으려는 날					
⑦ 시설제원					
설치장소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형식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처리대상 폐기물 조성(%)					
처리공정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 소각시설, (☐) 열분해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 설치, (☐)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각시설, 열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사용종료·폐쇄검사 80일)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⑥업종		⑦승인·허가번호	제 호
⑧승인 (허가) 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일)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⑫시설종류	[]관리형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⑬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⑭매립면적	(㎡)	매립용량	(㎡)
⑮침출수 처리시설	(㎡/일)	그 밖의 사항	
⑯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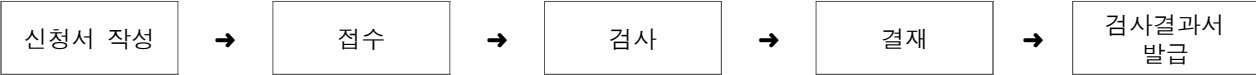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정기 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청인

검사기관

제 호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설치 ☐ 정기 검사결과서				
설치자	상호		업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장소				
검사연월일				
검사대상시설 제원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형식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폐기물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처리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검사자	(인)	(인)	(인)	
특기사항 (검사자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 설치, ☐ 정기)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검사기관의 장 인				

제 호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업 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⑥시설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⑦검 사 기 간		(일간)		
⑧현 장 검 사		(일간)		
⑨승인 (허가) 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 리 방 법		
		용 량	(㎡/일)	
그 밖의 사항				
⑩시설제원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		(㎡)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가능 용량			
	처리방법	1차:		
		2차:		
		3차:		
그 밖의 시설				
⑪검 사 결 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⑫ 검 사 자		(인)	(인)	(인)
⑬ 특기사항(검사자 의견)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제69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검사기관의 장 인				

기 관 명

우○○○-○○○/주소
담당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전송()○○○-○○○○

소각시설, 열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수 신

시행일
발 신

인

구분		검사일	성능검사시설				검사 결과	검사수수료 (원)	비고
			시설명	규격	소재지	소유자(업소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 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 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열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기 관 명

우000-000 / 주소
담당부서명 담당자

/ 전화번호()000-0000 / 전송()000-0000

매립시설 검사 실적 보고

문서번호
수 신시행일
발 신

인

[illegible]

폐 석 면 구 역 매 립 이 력 관 리 기 록 부

(앞쪽)

①연월일	②위탁내용			③구역매립 내용				④폐석면 전용 매립구역 평면도 · 단면도	관리자	
	배출자	배출자 소재지	위탁량 (kg)	매립량 (kg)	매립방법 (복토cm)	매립위치 및 깊이 (m)	매립량 누계 (톤)		이름	결재
								(첨부 가능)		

작성요령

1. 폐석면을 수탁하거나 매립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되, 위탁량, 매립량 및 구역매립 내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합니다.
2. 배출자란 및 소재지란에는 실제 폐석면을 배출한 자 및 배출한 건물 등의 소재지를 적고, 배출자가 위탁한 량을 적습니다.
3. ③구역매립 내용란의 매립위치 및 깊이(m)란에는 ④폐석면 전용 매립구역(A,B,C,D,E 블록 등)의 평면도, 단면도 상의 매립위치 및 깊이를 적습니다(예: 폐석면 전용매립구역 A블록의 ○, 깊이 ○m).
4. ④폐석면 전용 매립구역 평면도·단면도란에는 월별·연도별로 폐석면을 매립한 위치 및 내용 등을 표시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양수인 또는 인수인	⑥ 상호(명 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⑪ 양수·인수 업종	⑫ 허가·신고·승인·등록 연월 일	⑬ 허가·신고·승인·등록번호
	⑭ 양수·인수 가격	⑮ 양수·인수 일자	⑯ 인수 방법
	⑰ 양수·인수 사유		
	⑱ 미이행된 법적 책임		
	⑲ 보관·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전용용기 제조업

의 양수·인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 또는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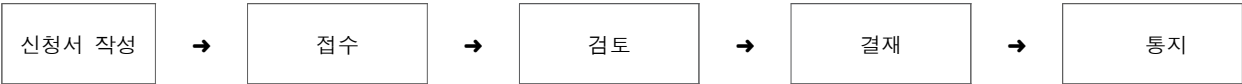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양도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경매 등을 통한 인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 ⑥란부터 ⑩란까지는 양수인 또는 인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⑭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고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⑮란에는 양수·인수 허가신청 현재 사업장에 보관·방치(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합니다) 중인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전용용기 제조업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합병 또는 분할 대상 법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⑤ 상호(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성명(대표자)	⑧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⑨ 합병·분할 대상 업종		⑩ 허가·신고·승인·등록 연월일	
	⑪ 허가·신고·승인·등록번호		⑫ 합병·분할 일자	
	⑬ 합병·분할 사유			
	⑭ 미이행된 법적 책임			
	⑮ 보관·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전용용기 제조업

의 합병·분할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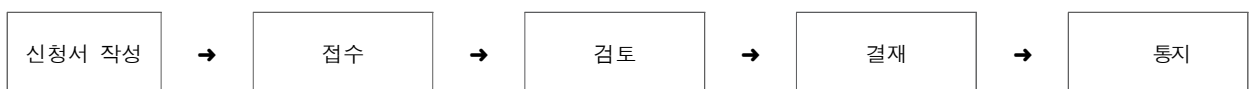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합병·분할 대상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 ⑤란부터 ⑥란까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 ⑨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 ⑩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⑭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고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⑮란에는 합병·분할 허가신청 현재 사업장에 보관·방치(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합니다) 중인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승계 내용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승 계 대 상	구분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 전용용기 제 조업 등록
		⑪ 업종				
		⑫ 허가·신고·승인 ·등록 연월일				
		⑬ 허가·신고·승인 ·등록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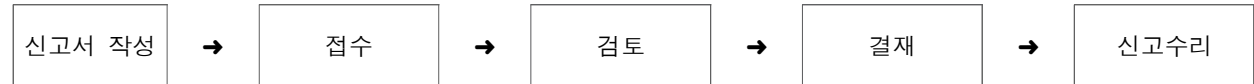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 ⑭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적습니다.
- ⑯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승인일·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 ⑰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 활용내용				③위탁재 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 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 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 리량	운반자	재 활용 자	재 활용 방법	위탁 재 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부숙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사 업 장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질 · 상태	발생량	발생량 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 처리량 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잔재물 발생내용		처리 방법	처리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3.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중간처분의 경우는 일반소각·고온소각 등으로, 최종처분의 경우는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재활용의 경우는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앞쪽)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재 활용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량	재 활용제 품의 공급 및 보관 내용					잔재 물 발생 및 처리내용				결 재
		재 활용량	재 활용제품			공 급 처			공급량	보관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량	처리자 (처리방법)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용 용도							
누계					X					X				X	

작성방법

1.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 고철, 유리병, 페트병, 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적습니다.
3. 연월일은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습니다.
4.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재활용대상 폐기물 보관량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6.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앞 쪽)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①공동수집·운반내용				공동처리내용												보관 량	결재	
				②위탁처리			③공동자가처리				④부산물처리							
연월일	배출 업 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수집· 운반량	위탁량	처리업소		처리량 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 누계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 장소	처리량			
					업소명	업종			처리 방법	처리량								

작성 방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공동처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 수집내용						③ 처리내용									④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위탁처리							
연월일	배출업소명	배출업소소재지	성질·상태	수집량	수집량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누계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량누계	④ 보관량		
							처리방법	처리량				업소명	업종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집,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 수집량, 처리량 및 보관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③란 중 자가처리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란은 소각·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란 중 위탁처리란은 날짜별·위탁업체별로 구분하여 적되, 그 처리업소명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②란의 배출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으며, 운반자란은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공동처리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7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작성방법

1.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은 신고증명서 발급번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①란 중 폐기물의 종류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HSK No.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3.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수입 및 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수입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4. ③란 및 ④란의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5.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사업자명을 적습니다.
6.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 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 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관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 수집내용						③ 운반내용						④ 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업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성질 · 상태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업소명	업 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날짜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적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③란은 날짜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②란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폐 기 물 중 간 처 분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② 위탁내용						③ 처분방법별 처분내용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 재	
	위탁 업 소명	위탁업소 소재지	성질 · 상태	위탁량	운반 업소명	위탁량 누계	소각	고온 열 분해	고형화 안정화	기타		처분량 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방법	양										

작성방법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분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③란은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안정화, 기타로 구분하여 그 처분량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 처분시설별 처리현황

① 처분시설 종류	폐 기 물 처 분 내 용					⑦ 보관량
	② 폐기물 종류	③ 처분방법	④ 금일 처리량	⑤ 처분누계	⑥ 처분 후 발생한 폐기물량	

2. 처분시설 가동내용

⑧ 시설 구분	⑨ 운전자 근무내용			⑩ 가동시간	
	시 간	운 전 자	인	금 일	누 계

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용 용 기 생 산 · 판 매 · 품 질 검 사 관 리 대 장

(①전용용기 종류 : , 용량 : , 규격 :) (단위: 매, 개)

② 품질검사 내용				③ 생산내용			④ 판매 내용				⑤ 재고량	결 재	
연월일	검사기관	검사결과 발급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생산량	생산량 누계	연월일	판매처	판매량	판매량 누계			

작성방법

1. 전용용기의 종류·용량·규격별로 전용용기 생산·판매·품질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전용용기 종류별(봉투형, 골판지류 상자형, 합성수지류 상자형 중 택1) 및 재질, 용량, 규격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3.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전용용기의 검사결과 합격통보 받은 전용용기의 생산, 판매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판매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전산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대장양식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날짜별로 작성된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④란의 판매내용은 판매 연월일마다 판매처별 판매량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의 재고량은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폐 기 물 최 종 처 분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② 위 탁 내 용						③ 처 분 내 용		보관량	결 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소재지	상 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 누계	처분량(매립)	처분량 누계			

작성방법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및 ③란은 폐기물을 수탁하거나 최종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최종처분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③란은 매립처분량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 · 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매립시설 운영									
매립시설 면적(㎡)	매립시설 용량(㎡)	허가·승인받은 매립대상 폐기물		당일 매립 폐기물의 종류		당일 매립량(톤)	복토량(톤)	잔여용량 (㎡)	비 고
2. 침출수 처리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처리량(㎡)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농도			
		가동시간	운전자	이상 유무	기준 이내	기준 초과		비고 (방류수 측정주기)	
						항목	농도		
3. 침출수 등의 매립층 주입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m)		매립가스 포집량(㎡)		
4. 제 방 등 시설 안전도	점검시간	점검내용	이상 유무	점검자	5. 악취농도				
6.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					7. 특기사항				
						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폐 기 물 종 합 처 분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② 위탁내용						③ 처분내용(처분방법별)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 재	
	위탁	위탁업소	성질 · 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 누계	중간처분		최종처분량 (매립량)	보관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업소명	소재지					방법	양									

작성방법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운반업자명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 재활용시설별 운영현황

재 활용 시설 종류	폐 기 물 재 활 용 내 용							보 관 량
	폐기물 종류	재 활용 방법	재 활용 량		재 활용 제 품 생 산 량		재 활용 후 발생된 폐 기물량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2. 재활용시설 가동내용

시설구분	운전자 근무내용			가동시간	
	시 간	운 전 자	①	금 일	누 계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g, kw, m³, kcal 중 선택)

연월일	① 수탁내용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 업소명	수탁량	재활용 방법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연 월 일	⑤ 재활용제품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한다)		⑥ 재활용제품(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 및 보관 내용								결재
			공급처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 사유	보관량	
	종류	생산량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사용 용도					

작성방법

1. 폐기물종류는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단위는 톤, g, kw, m³, kcal 중에서 선택하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고, 수탁량 및 재활용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잔재폐기물이 발생 또는 처리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①란의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습니다.
5. ②란의 재활용방법란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는 별표 4의2에 따른 방법을,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6. ③란의 수탁폐기물 보관량란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7. ④란의 잔재폐기물 처리 내용란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재활용제품란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⑥란의 공급처란의 업종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처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재활용제품의 특성, 보관 및 운송과정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대장의 보관량과 현장의 보관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습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g, kw, m³, kcal 중 선택)

연 월 일	① 수탁내용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 업소명	수탁량	재활용 방법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연 월 일	⑤ 중간가공폐기물				⑥ 중간가공폐기물의 공급 및 보관 내용									결재
					공급처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 사유	
	종류	생산량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사용 용도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					
		계	재활용토사	일반토사(건설 폐재류)										

작성방법

1. 폐기물종류는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단위는 톤, g, kw, m³, kcal 중에서 선택하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고, 수탁량 및 재활용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잔재폐기물이 발생 또는 처리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①란의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습니다.
5. ②란의 재활용방법란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는 별표 4의2에 따른 방법을,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6. ③란의 수탁폐기물 보관량란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7. ④란의 잔재폐기물 처리 내용란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중간가공폐기물란 종류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복토재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토사(재활용 대상 폐기물)와 일반토사(건설폐재류)의 투입량을 각각 적습니다.
9. ⑥란의 공급처란의 업종은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처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에는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한 자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고,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습니다.
11. ⑥란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재활용제품의 특성, 보관 및 운송과정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대장의 보관량과 현장의 보관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습니다.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① 연월일	② 제조량 또는 수입량(톤)	③ 출 고		⑥ 재 고	⑦ 비 고	⑧ 결 재	
		④ 출고량	⑤ 매출액				

작성방법

1. 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에서 분류된 제조·수입 제품의 규격, 재질(용기류 등), 형태(뚜껑분리형 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회수·처리 대상 제품이 제조·수입 또는 출고될 때마다 날짜별로 적고,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3. 단위는 개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 리터)
4. ㉮란은 리튬전지, 망간건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및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무게를,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적습니다.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① 연월일	② 회수량	③ 처 리		⑥ 미처리량	⑦ 비 고	⑧ 결 재	
		④ 처리량	⑤ 무게(kg)				

작성방법

1.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에서 분류된 제조·수입 제품의 규격, 재질(용기류 등), 형태(뚜껑분리형 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고,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3. 단위는 개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 리터)
4. ⑤란은 리튬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및 가전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업종		⑧ 허가(신고)번호	
☐ 휴업 ⑨ ☐ 폐업 연월일 ☐ 재개업		⑩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휴업 ⑪ ☐ 폐업 사유 ☐ 재개업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휴업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 휴업 신고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폐업
☐ ☐ 재개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번호	
---------------------	--

[] 폐기물 분석전문 분야	일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석면(□)	지정번호
-----------------	-------------------------------	------

[] 휴업		재개업 예정 연월일	
[] 폐업	연월일	(휴업인 경우)	
[] 재개업			

☐ 휴업 ☐ 폐업 사유 ☐ 재개업	
--	--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 휴업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 재개업

의
인
부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전용용기 제조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생산 전용용기)				등록번호			
☐ 휴업 ☐ 폐업 연월일 ☐ 재개업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휴업 ☐ 폐업 사유 ☐ 재개업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 휴업 을 신고합니다.
 [] 폐업 [] 재개업

이
아
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① 업소명		② 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배출시설	1. 대기 중 2. 수질 중	⑦ 업종	()□□□□□		
⑧ 공단		⑨ 주 생산품		⑩ 종업원 수	명
⑪ 제품제조과정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 . .			
		㉢ 관리번호 제 호			
		㉣ 확인일: . . .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시설명		㉡ 사용개시일	㉢ 처리능력(톤/일)			㉣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 .						
매립시설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m ²		m ²	m ²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 종류 (분류번호)	㉢ 총 발생량 (톤/년)	㉣ 성질 ·상태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보관량 (톤/년)		㉧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⑮ 자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 구분	㉡ 종류 (분류번호)	㉢ 발생량 (톤/년)	㉣ 성질·상태	㉤ 처리자 구분	㉥ 처리 방법	㉦ 처리량 (톤)	㉧ 보관량 (톤)	㉨ 처리자(장소)명
총 계								

작성방법

-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 ⑤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의 ㉠란은 해당 시설명과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⑭란의 ㉠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 ⑭란의 ㉤란 및 ㉥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 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8] 해양배출업자, [9]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10] 공공처리(국가)시설, [11] 기타
- ⑮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 ⑮란의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 ⑮란에서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합니다.
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나.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별지 제49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작성방법

1. ⑥란은 세관발행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일을 적습니다.
2. ⑦란 중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4. ⑫란 중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업소명을 적고,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 중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중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앞쪽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제49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작성방법

1. ⑥란은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일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4. ⑫란 중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업소명을 적고,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 중 처리구분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앞쪽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년도) 폐기물 수집 · 운반 실적보고서
(수집 · 운반업자용)

이
한
부

문서번호:

수 신: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이

① 상 호(명 칭):		② 성 명(대 표 자):		③ 업 종:	
④ 허 가 번 호 제 호		⑤ 소 재 지(사 무 실):			
⑥ 영 업 대 상 폐 기 물:					
⑦ 시설 및 장비 명세	시 설·장 비 명	규 격 (능 력)	소 재 지		비 고

⑧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내 용

[illegible]

작성방법: 별도 작성지침서 참조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년도)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중간처분업자용)

의
아
노

문서번호:

수 신: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 신: (업소명) (대 표) 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대 표 자):	③ 업 종:
④ 허 가 번 호 제 호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⑤ 소 재 지(사 무 실):	

⑥ 영 업 대 상 폐 기 물 :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신고)일	사용개시일	소재지
⑦ 시설 및 장비 명세					

⑧ 폐 기 물 위 탁 및 중 간 처 분 내 용

[illegible]

⑨ 잔재물 발생내용				⑩ 잔재물 처리내용				
㉠ 구 분	㉡ 폐기물 종 류 (분류번호)	㉢ 발생량 (톤)	㉣ 성질·상태	㉤ 처리자 구 분	㉥ 처리방법	㉦ 처리량 (톤)	㉧ 보관량 (톤)	㉨ 처리자 (장소)명
총 계								

작성방법

- ⑧란의 ㉠란 및 ⑨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의 ㉡란 및 ⑨란의 ㉢란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 ⑨란은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 ⑩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 ⑩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⑨란 및 ⑩란에서 "잔재물"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재활용업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사무실):			
허가번호: 제 호		영업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종업원 수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지정폐기물: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 · 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 (신고)일		사용 개시일
	계량시설 유 · 무	계량시설 규격 (톤, kg)	계량시설 설치일		계량시설 사용개시일

재 활용 용 현 황

[illegible]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

① 구분	②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③ 수탁량 (톤)	④ 성질 · 상태	⑤ 재활용방법	⑥ 재활용량(톤)	⑦ 재활용 제품 생산량(톤)	⑧ 보관량(톤)
합 계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⑨ 구분	⑩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⑪ 발생량 (톤)	⑫ 성질 · 상태	⑬ 처리자 구분	⑭ 처리방법	⑮ 처리량(톤)	⑯ 보관량 (톤)	⑰ 처리자 (장소)명
합 계								

작성방법

- ①란 및 ⑨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 ②란 및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 및 ⑪란은 수탁(잔재)폐기물량을 적습니다.
- ④란 및 ⑫란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액상[1], 고상[2]
- ⑤란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을 적습니다.
- ⑥란 및 ⑮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 ⑦란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 제품량을 적습니다.
- ⑧란 및 ⑯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미처리 보관량을 적습니다.
- ⑬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 ⑨란부터 ⑰란까지에서 "잔재물"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 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년도)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최종처분업자용)

이
하
지

문서번호:

수 신: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 신: (업소명) (대 표)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업종:
④ 허가번호 제 호 설치승인번호 제 호	⑤ 소재지(사무실):	

⑥ 영업대상 폐기물: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일	사용개시일	소재지
⑦ 시설 및 장비 내용					

⑧ 폐기물 위탁 및 최종처분 내용

㉠ 폐기물 종류	㉡ 성질 · 상태	위탁내용			㉢ 최종처분량 (톤/년)	㉣ 보관량 (톤)
		㉤ 업소명	㉥ 소재지	㉦ 위탁량 (톤/년)		
총 계						

작성방법: 별도 작성지침서 참조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년도)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
(최종처분업자용)

이
의
의

문서번호:

수 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발 신:(업소명) (대 표)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업종:	
④ 허가번호 제 호		⑤ 소재지(사무실):			
⑥ 폐석면 구역매립 내용					
㉠위탁량(톤)	㉡매립량(톤)	㉢매립방법 (복토 cm)	㉣구역매립 위치 및 깊이(m)	㉤폐석면 전용 매립구역 평면도·단면도	㉥보관량(톤)
				“첨부 가능”	
계					

작성요령

- ① 폐석면 구역매립 내용란 중 ㉠구역매립 위치 및 깊이(m)란에는 해당 년도에 폐석면을 매립한 위치 및 깊이를 적되, ㉡폐석면 전용 매립구역(전체, A,B,C 블록 등)의 평면도, 단면도와 연계하여 적습니다(예: 폐석면 전용매립구역 블록의 ○, 깊이 m).
- ㉢폐석면 전용 매립구역 평면도·단면도란에는 해당 연도에 폐석면을 매립한 위치 및 내용과 전년도까지의 폐석면을 매립한 위치 및 내용 등을 함께 표시합니다.

우 000-000 / 주소 / 전화번호() 000-0000 / 전송() 000-0000
담당부서 담당자

인

작성방법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앞쪽)

(년도) 폐기물 시험·분석 보고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

문서번호: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

발신: (분석기관명)

(대표자)

인

①기관명:	②성명(대표자):	③분야 : ☐ 일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석면
④지정서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분야)

㉠ 배출자	㉡ 분석의뢰자	㉢ 분석기관	㉣ 시료번호	㉤ 시료채취일	㉥ 시료분석일	㉦ 결과발송일	㉧ 해당시도

㉨ 시료내역	㉩ 시료명	㉪ 분석결과	㉫ 항목기준	㉬ 기타			

⑦ 폐기물분석전문기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분야)

㉠ 배출자	㉡ 분석의뢰자	㉢ 분석기관	㉣ 시료번호	㉤ 시료채취일	㉥ 시료분석일	㉦ 결과발송일	㉧ 해당시도

㉨ 시료내역	㉩ 시료명	㉪ 분석결과	㉫ 항목기준	㉬ 기타			

⑧ 폐기물분석전문기관(석면분야)

㉠ 배출자	㉡ 분석의뢰자	㉢ 분석기관	㉣ 시료번호	㉤ 시료채취일	㉥ 시료분석일	㉦ 결과발송일	㉧ 해당시도

㉨ 시료내역	㉩ 시료명	㉪ 분석결과	㉫ 항목기준	㉬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우〇〇〇-〇〇〇 / 주소 / 전화번호()〇〇〇-〇〇〇〇 / 전송()〇〇〇-〇〇〇〇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방법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08.8.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 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⑦수집·운반대상 폐기물					
⑧장비 현황 (수집·운반차량 종류, 톤수, 대수)					
⑨수집·운반계획					
⑩영업개시일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신고증명서 발급

결 재

폐기물처리(재활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①상 호 (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 (m)	용량 (m³)	수량 (개 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⑯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⑰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를 합니다.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변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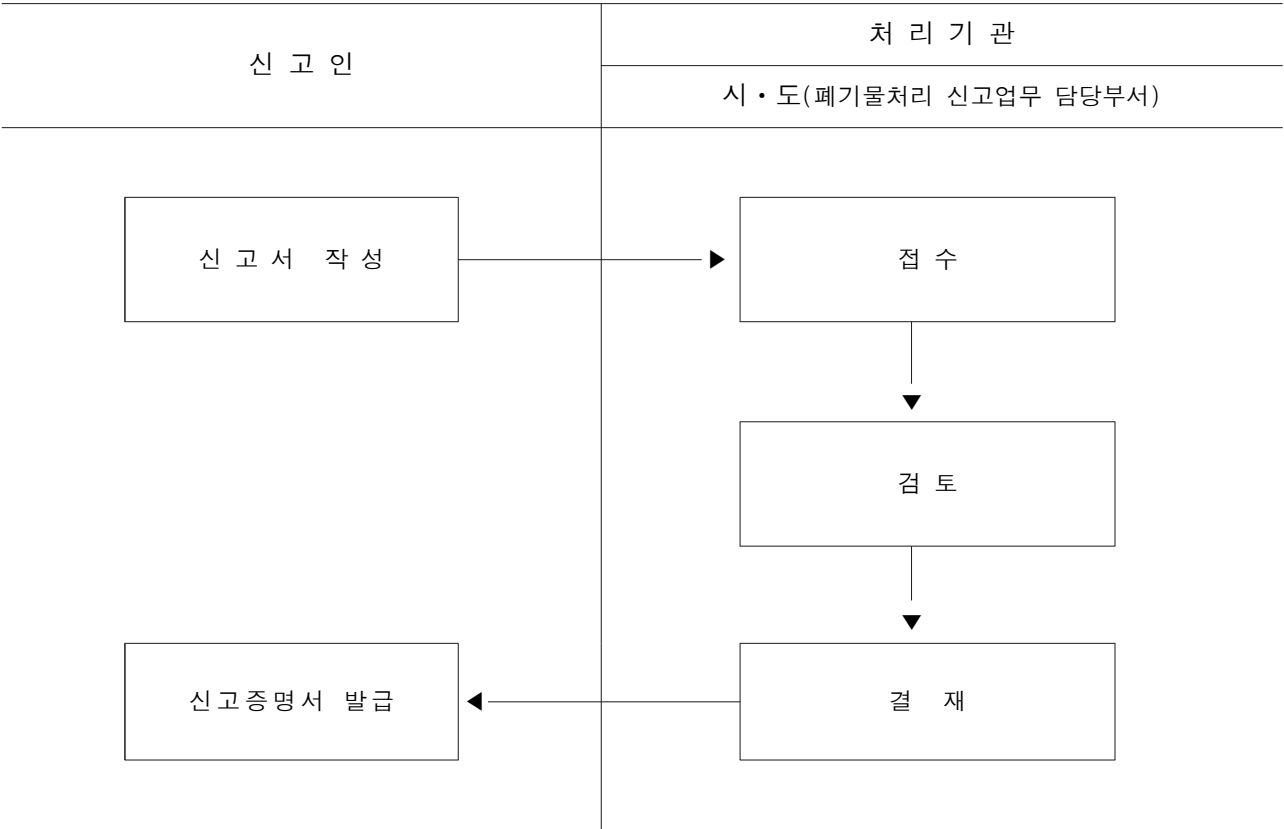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⑥ 수집·운반대상 폐기물			
⑦ 장비 (수집·운반차량 종류, 톤수, 대수)			
⑧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 변경사유			
⑩ 유효기간 등 그 밖의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				
⑦ 재활용 유형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⑨ 재활용 제품 등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 1일 처리능력				
⑫ 수집·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 공정도				
⑭ 보관시설 및 보관량	용량(㎥) 및 규격(m)	수 량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⑰ 유효기간 등 그 밖의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행정처분
[] 판결·결정 정보통보서

(앞쪽)

행정처분 대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종				
⑦ 행정처분 기관		⑧ 행정처분 날짜	년	월	일
⑨ 위반 내용 (위반 조 문)		⑩ 위반 날짜	년	월	일
⑪ 행정처분 내용 (근거 조문)					
⑫ 행정처분 불복 여부					
⑬ 판결·결정 기관		⑭ 판결·결정 날짜	년	월	일
⑮ 판결·결정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판결·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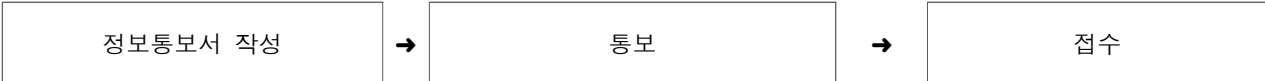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행정처분 부과 문서 1부.
2. 판결·결정문 1부.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처리 신고 등으로 적되, 재활용업 및 중간처분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3. ⑨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 불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예) 행정심판 제기 또는 제기 예정

처리절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사용종료

[] 폐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 100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종류	규격 (능력)	설치 승인·신고 또는 허가일	사용 개시일	사용종료 (폐쇄) 예정일	매립시설인 경우		
					승인·신고 또는 허가 면적(㎡)	사용종료 면적(㎡)	매립량(㎡)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신고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 사용종료, []폐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수리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대상 매립시설	소재지:		
	종류:		
	설치승인(허가)일:		
	사용개시일:		
	사용종료일:		
	설치승인(허가)면적(㎡):		
	사후관리면적(㎡):		
	사후관리기간:		
매립폐기물 종류			
신청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 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종료여부 통보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사후관리 매립시설	⑥ 상호(명칭)	⑦ 매립폐기물 종류	
	⑧ 허가·승인·신고일	⑨ 허가·승인·신고 면적(㎡)	
	⑩ 소재지		
	⑪ 사용종료일	⑫ 최근 사후관리 정기검사일	
	⑬ 상부토지이용현황		
승계사유	[] 양수 또는 인수 []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 상속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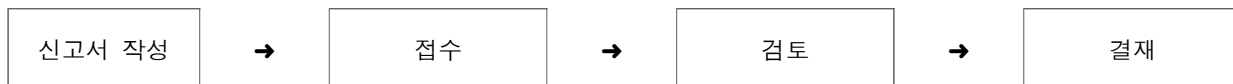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⑥란부터 ⑩란까지는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귀하가 설치·운영한 후 사용이 끝난 아래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임을 알리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립시설 종류:
2. 매립시설 소재지:
3. 설치 승인(허가)일:
4. 사용종료 면적: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

1. 사후관리 소요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하여 산출하되, 사용종료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지난 기간은 비용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하수 검사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을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매립이 끝난 후 3년까지는 그 항목을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릅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제출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 매립시설 소재지			
⑦ 매립시설 면적	m ²	⑧ 매립시설 용량	톤
⑨ 매립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⑩ 매립시설 사용종료 (예정일)	
⑪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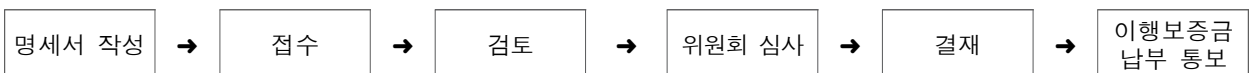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출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매립시설 현장조사
(필요시)

협의(확인)기관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 매립시설의 종류:
- 매립시설의 소재지:
- 설치승인(허가)일:
- 납부방법:
- 납부기한: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매립시설 소재지			
⑦ 매립시설 사후관리개시일		⑧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예정)일	
⑨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액		⑩ 반환금 지급장소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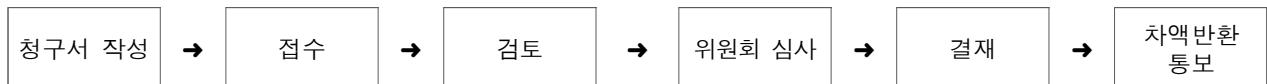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후관리등 비용 지출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⑩란은 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매립시설 소재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적립방법(기간)			
최초 사전적립일		매년 적립예정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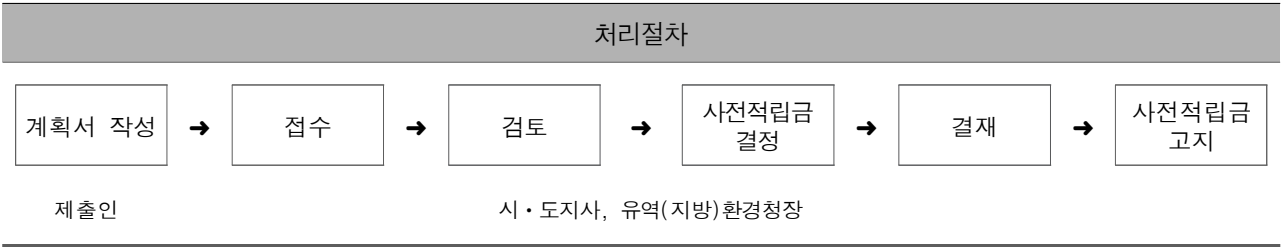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2. 적립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4항·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의 반환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예치금액	반환결정금액	반환금 지급장소(은행 및 계좌번호)

붙임: 반환금액 산출근거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토지 용도 ·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매립시설 설치자	
매립시설 소재지	
이용용도	
이용기간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7호서식] 삭제 <2008.8.4>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

신청인	①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개요

⑩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 번호	⑭최초 차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⑯최대 적재량(톤)

⑰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전용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임시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차량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요령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2.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상태를 액체 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	-----	-----	---------

제출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계획

⑩ 폐기물종류	⑪분류번호	⑫폐기물 정보						⑬농도 (ppm)	⑭성 질 · 상 태	⑮배 출 사 유	보관계획	
		제 작 연 도	제 작 회 사	용 량 (kVA)	총 무 게 (kg)	절 연 유 량 (ℓ)	수 리 연 도				⑯보관장소	⑰보관기간
	□□-□□-□□											
	□□-□□-□□											
	□□-□□-□□											
	□□-□□-□□											
	□□-□□-□□											
⑱폐기물 운반방법				[] 자 가 [] 위 탁(업소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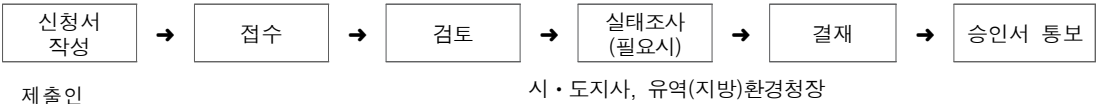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요령

-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 2. ⑨란에는 폐기물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시)변압기, 콘덴서
- 3. ⑩,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 4. ⑫란은 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 기초정보를 적되, 보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폐기물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⑬란은 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 분석 결과를 적습니다.
- 6. ⑭란은 액체상태이면 "액상",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용기(철제드럼·PE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 7. ⑮란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예시)사고, 내구연한을 다함
- 8. ⑯란은 폐기물이 실제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예시)00사업소 보관, 00보관소 보관
- 9. ⑰란은 보관개시일과 보관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최대 1년)을 적습니다.
(예시) 2006.10.17.(보관개시일)~2007.10.16.
- 10. ⑱란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으로 하고 위탁처리업소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관 리 번 호		확 인 기 관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기간 연장승인 대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보관개시일	보관기간 보관기간 연장사유	보관방법	농도	
	□□-□□-□□					
	□□-□□-□□					
	□□-□□-□□					
	□□-□□-□□					
폐기물 일반정보						
제작연도	제작회사	용량(kVA)	총무게(kg)	절연유량(ℓ)	배출사유	제 조공정
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